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내역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내역서를 포함하며, 이하 “확인내역서”라 한다)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확인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확인내역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이하 “성분내역서”라 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3.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②협회의 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출한 확인내역서를 검토·분석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
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확인증명의 신청)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
질확인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를 첨
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화학물질의
사용용도·명칭·구조식 및 면제사유 그 밖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5조(유해성심사 신청) ①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 용도, 녹는 점, 끓는 점, 증기압, 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및 수생생태독성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합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②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자료의 작성방법, 독성·분해성 등에 대한 시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6조(자료제출의 생략)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생생태독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일부 시험성적서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중 일부 또는 모든 시험성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별로 생략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7조(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 등에 따른 유해성의 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시험자료의 요청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8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3.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유 및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고시) ①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하거나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4.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기관의 시설현황 내역서
2. 지정신청 기관의 운영현황 내역서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세부시험항목의 변경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

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서 및 지정서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11조(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12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①지방환경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2.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해성평가 방법·절차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독성자료와 국내노출정보를 기초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위해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평가기간
3. 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
4. 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
5. 노출량 반응 평가

제16조(유독물의 수입 신고)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의 변경
2. 신고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을 제외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필증 원본

제17조(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자체방제계획(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유독물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2. 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3. 등록된 유독물 품목의 변경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③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제20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1.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내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2조(안전진단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명령서
2.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3. 유독물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 2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3조(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개선계획서의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시설의 개선내역서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3. 개선기간 동안 유독물의 안전관리계획

④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①법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의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유독물영업등록증 원본
3.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8조(유독물의 표시) ①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의 분류기준, 유해그림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권고내용,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0조(공동활용의 변경신고) 공동활용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31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신고한 제조·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필증 원본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허가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취급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 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⑤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내용을 통지받은 자가 다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6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고, 수입국에서 당해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장은 수입국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서 원본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4. 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5.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영업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여 자체방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간 이내에 자체방제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연도 30일 이내
2. 보관·저장시설의 증가에 따른 경우에는 증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에의 고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8조(사고의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①지방환경관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예측되는 환경 및 인체 노출량
5.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0조(화학물질정보제공)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외의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 평가, 오염도 측정 및 유통량·배출량의 조사자료
2.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체물질 및 위해저감 대책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예방·대응 및 조치 관련 정보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①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해 2월말까지 협회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서 외에 별도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현황을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출입·검사 등) ①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16조제1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상호 동일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43조(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제44조(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의 해당여부 등을 검사함에 있어 그 분석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서류의 기록·보존)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학물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제4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과징금의 납부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지방환경관서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제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1조(자료보호신청서의 검토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지방환경관서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호대상·보호요청기간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자료의 관리방법) ①법 제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호자료의 관리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2. 열람의 절차 및 방법
3. 보관서류장 및 잠금장치의 관리
4. 보호대상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3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질관리자 과정
2. 유독물질관리자 양성과정

②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제54조(교육기간 등)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3년마다 제53조제1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교육계획) ①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7조(교육결과 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상황·시설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과정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희망자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60조(교육경비)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61조(수수료)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62조(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6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 신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 중 수생생태독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수입자는 3월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고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새로이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당해 취급시설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유독물영업자 또는 유독물수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경우

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가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제17조관련)

업종별	시설	기준
1. 유독물제조업 및 유독물사용업	제조시설	(1) 바닥은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흘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보관시설> (1) 기구 및 장비 (가)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유독물을 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시설 설치기준 (가) 바닥은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 유독물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창문에 보호철망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보관시설 안에 선반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풍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바) 보관시설의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흘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시설> (1) 기구 및 장비 : 보관시설의 기준과 같다. (2) 그 밖의 시설 (가) 저장물질의 부식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p>(다) 저장물질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저장시설 또는 그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마)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을 설치하여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을 부득이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독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준에 따른 장비등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시설	<p>(1)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유독물의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p>
2. 유독물판매업	보관·저장시설 (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독물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다.
	그 밖의 시설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3. 유독물 보관·저장업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그 밖의 시설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4. 유독물운반업	운반차량 및 장비	<p>(1) 운반차량</p> <p>(가)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p>

		(나) 액체상태의 유독물(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장비 (가) 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삼 등을 2인용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 고

1.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구 및 장비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방제투입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계획에 따른다.
2. 유독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당해 유독물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나. 취급자는 사업장안의 바닥을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균열·노후·마모·파손 등에 의하여 바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 다. 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구·장비·이송배관·밸브 및 누출방지시설 등 관련 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당해 시설 및 장비를 제17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취급자가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유독물을 유통시킬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마. 취급자는 같은 용기에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 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독물을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때에는 용기에 묻어 있는 유독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바. 취급자는 유독물이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유독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 가. 유독물을 제조·사용하는 자는 당해 유독물의 제조·사용과정의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 등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고,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압력계와 설비 및 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1회 투입량 또는 1일 투입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를 보관 및 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유독물 500킬로그램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유독물의 저장·보관 관리

- 가.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연결파이프 등이 부식·손상·노후되어 유독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취급자는 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액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한다.
- 라. 취급자는 유독물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마. 취급자는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입·출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상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입·출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단위로 재고량 정리를 할 수 있다.
-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유독물과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 취급자는 유독물과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을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유독물의 운반관리

- 가. 취급자는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탱크로리·트레일러 등)가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 나.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이를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유독물을 1회 5,000kg 이상 운반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여 휴대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한다.
 -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 도로의 선정은 가능한 한 강·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한다.
 -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보유 :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사고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시 신고 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에 인접한 하천 통과시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 3)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사고시에 인근 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 라.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별표 3]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제25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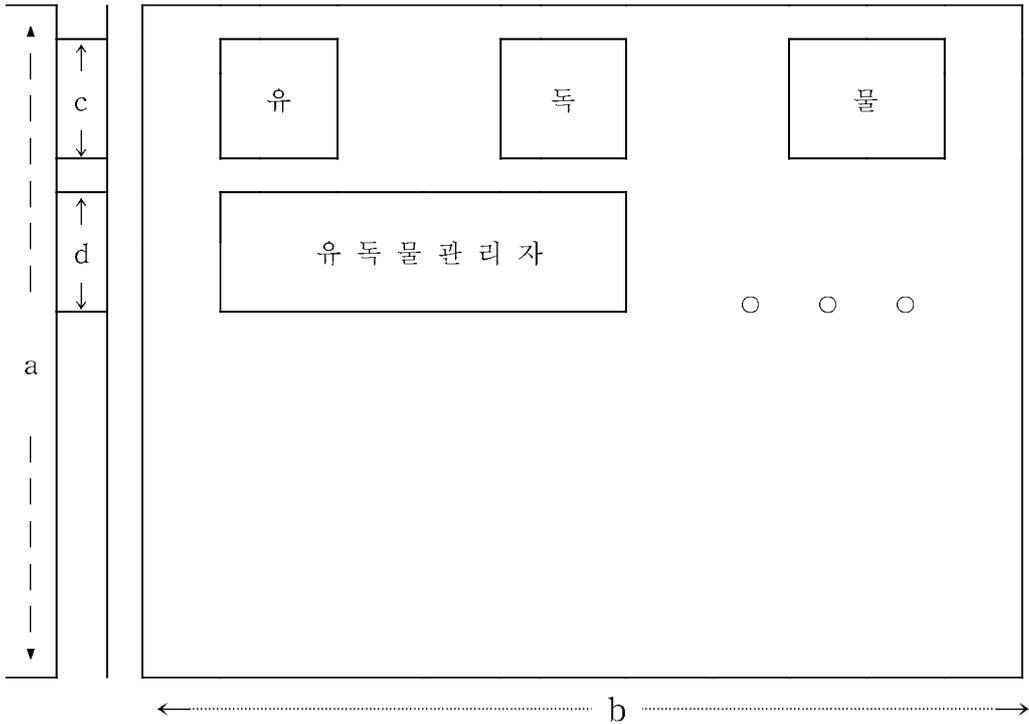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4]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제28조제1항관련)

1.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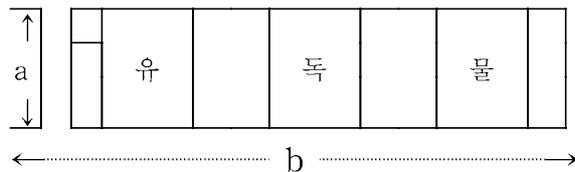


나. 규격 :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4a$,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유독물)는 빨강색·문자(유독물 관리자, 성명)는 검정색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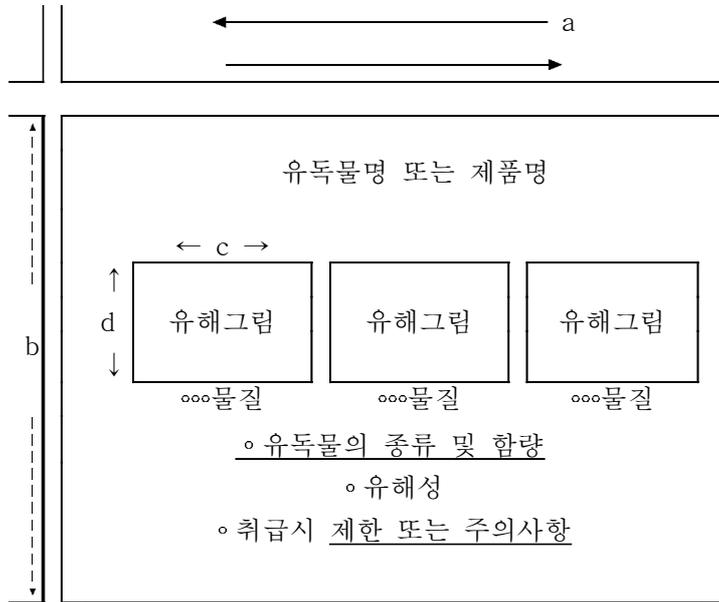
가. 양식



나. 규격 : $a=20\sim 30\text{cm}$ $b=80\sim 100\text{cm}$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문자(유독물)는 빨강색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 식



※ 비고 :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독물명 또는 제품명과 유해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규 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규 격
500ℓ 이상	$45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leq a \leq 4b$ $0.1(a \times b) \leq c \times d$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leq a \leq 4b$ $0.1(a \times b) \leq c \times d$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leq a \leq 4b$ $0.1(a \times b) \leq c \times d$
5ℓ 이상 50ℓ 미만	$90\text{cm}^2(a \times b)$ 이상 $0.25b \leq a \leq 4b$ $0.1(a \times b) \leq c \times d$
5ℓ 미만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0.25b \leq a \leq 4b$ $0.1(a \times b) \leq c \times d$

다. 색 상

- 1) 전체표시의 바탕은 흰색이나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테두리 및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문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한다.
- 2)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오렌지색), 테두리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마.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 제1호·제36조제1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2호·제36조제2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3호·제36조제3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 제4호·제36조제4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5호·제36조제5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 제6호·제36조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7호·제36조제7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당해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9)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
(10)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건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설·장비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월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정기·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나) 정기·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1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17)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유독물관리자선임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유독물관리자변경명령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18)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19)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20)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2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2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4)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제47조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 (톤)		
	1,000 미만	1,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요건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3,000	6,000	18,000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000	6,000	18,000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00	3,000	6,000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0	6,000	18,000
(7)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8)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건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3,000	6,000	18,000
(9)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000	12,000	30,000
(10)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00	3,000	6,000
(1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600	1,800	4,200

받지 아니한 경우			
(14)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7)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 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8)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판매 또는 제공금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1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00	1,800	4,200
(20)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00	1,800	4,200

비고 : 위 표에서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이라 함은 위반행위를 발견
한 당해연도 직전 1년간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다만, 영업개시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별표 7]

수 수 료(제61조관련)

1.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수수료는 취급시설의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검사기술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 별	수 수 료
1.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10,000원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50,000원
3.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10,000원
4.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
5. 유독물의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6.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9,000원
7. 유독물영업의 등록	13,000원
8.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9,000원
9.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0.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9,000원
1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13,000원(매품목당)
1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9,000원
13.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3,000원
14.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
15.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13,000원
16.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9,000원

비 고 :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 또는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제62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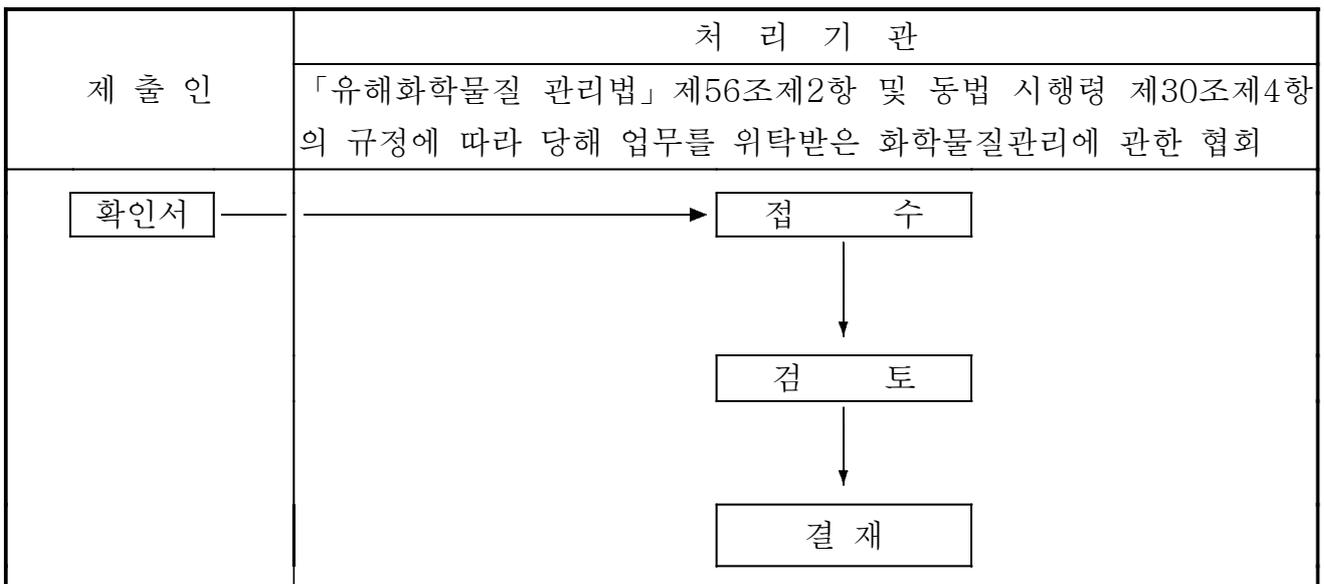
업 무 내 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보 고 자
1.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 실적, 제출자료 보호 현황	수시	사유발생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2. 유독물영업등록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현황, 폐업 등의 신고현황	연 1회	다음해 15일 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3. 유독물관리자의 업종별·자격별 현황,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승인의 현황	연 1회	다음해 15일 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4. 유독물영업자,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5.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내역	수시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지방환경관서장
6. 유독물 사고발생 및 조치 현황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7. 과징금 부과 실적 및 체납 처분 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8. 과징금 징수 실적	연 12회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
9. 유해성심사 현황, 자료보호 현황	연 12회	다음달 10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10. 유해성심사면제확인 현황, 자료보호현황	연 12회	다음달 10일 까지	협회의 장
11. 유독물 수입 신고현황,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협회의 장
1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
1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후 영향조사 결과	수시	영향조사 실시 후 1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

(뒤쪽)

※ 작성요령

1. “제조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라 함은 동법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자(「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⑥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5. ⑨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기재합니다.
7. ⑪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⑮란의 각 확인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8.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수행한 자를 말합니다.
9. ⑮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 관찰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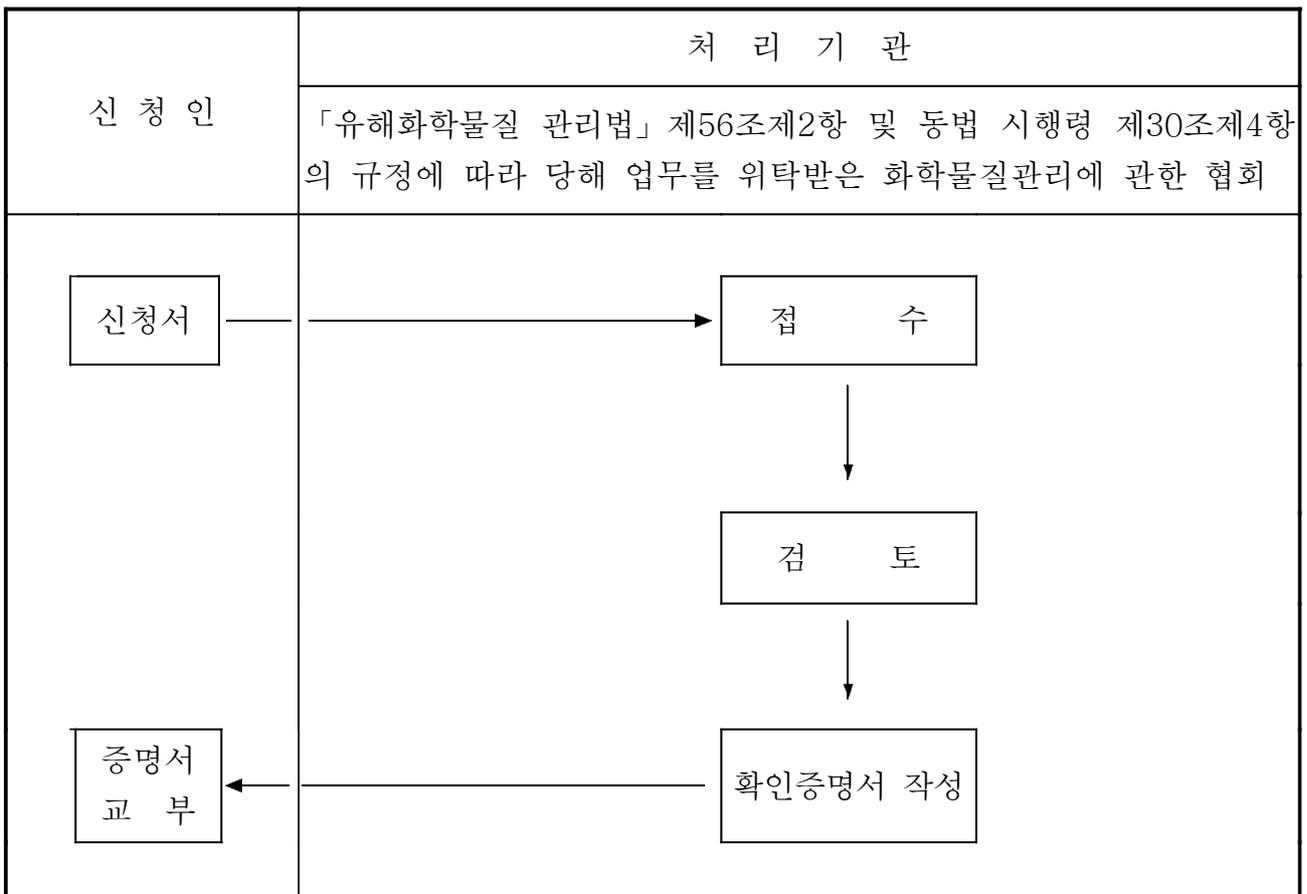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화 학 물 질 확 인 증 명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일 (전문기관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 청 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⑪ 자료보호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⑫ 확인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규화학물질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관찰물질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화학물질의 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 첨부 서류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10,000원

※ 작성요령

1. ⑥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4. ⑨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5. ⑩란은 그 제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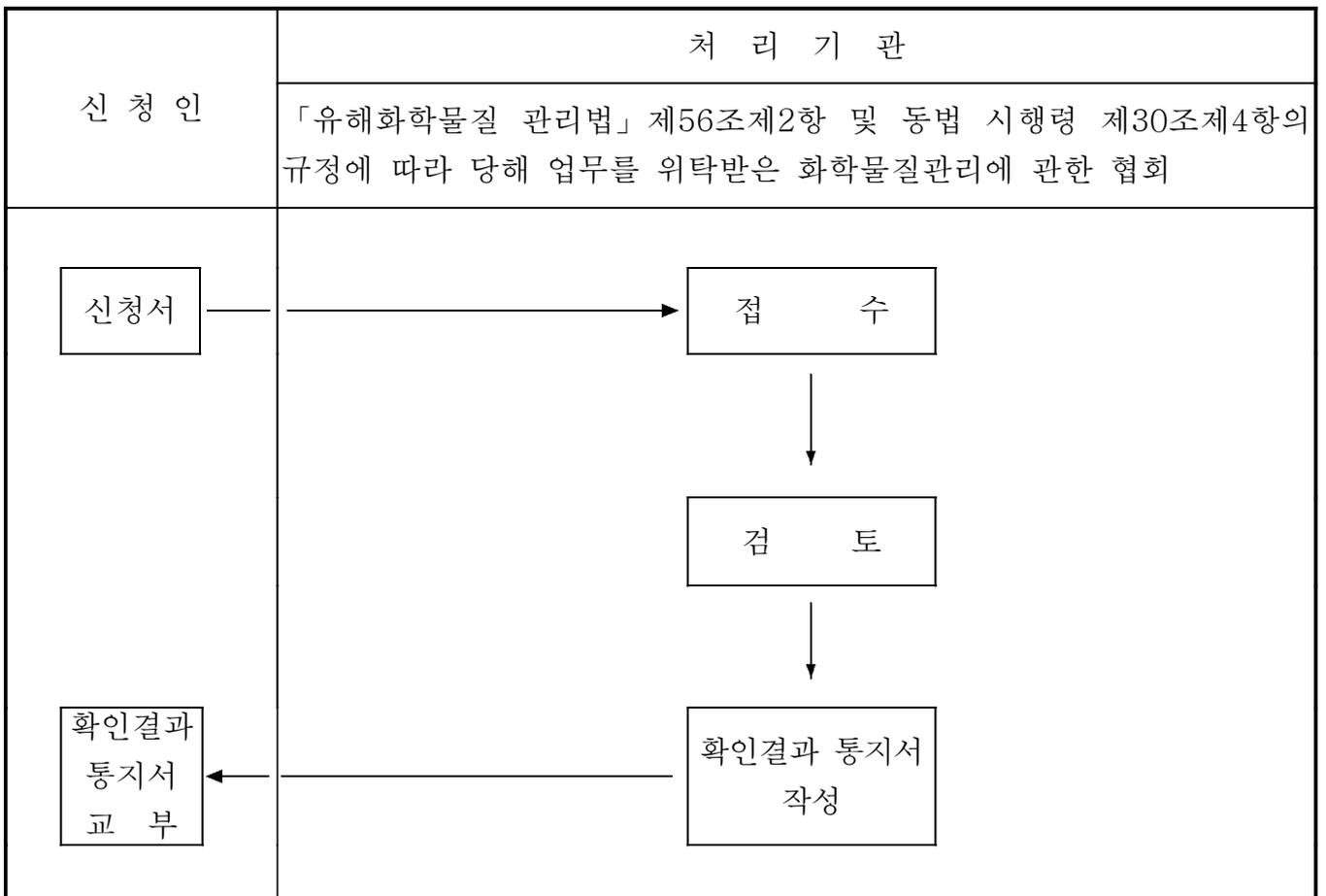
증명번호		<input type="checkbox"/> 제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수입		
제 호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전화:)		
⑤ 제품명(상품명)				
⑥ 수 입 국				
⑦ 연간제조(수입)예정량		kg		
⑧ HSK No.				
⑨ 주 요 용 도				
⑩ 확 인 신 청 내 용(신청인)			⑪ 확 인 내 용(협회)	
⑫ 확 인 조 건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근거한 <input type="checkbox"/>제조 <input type="checkbox"/>수입 화학물질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협회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1. ⑥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그 제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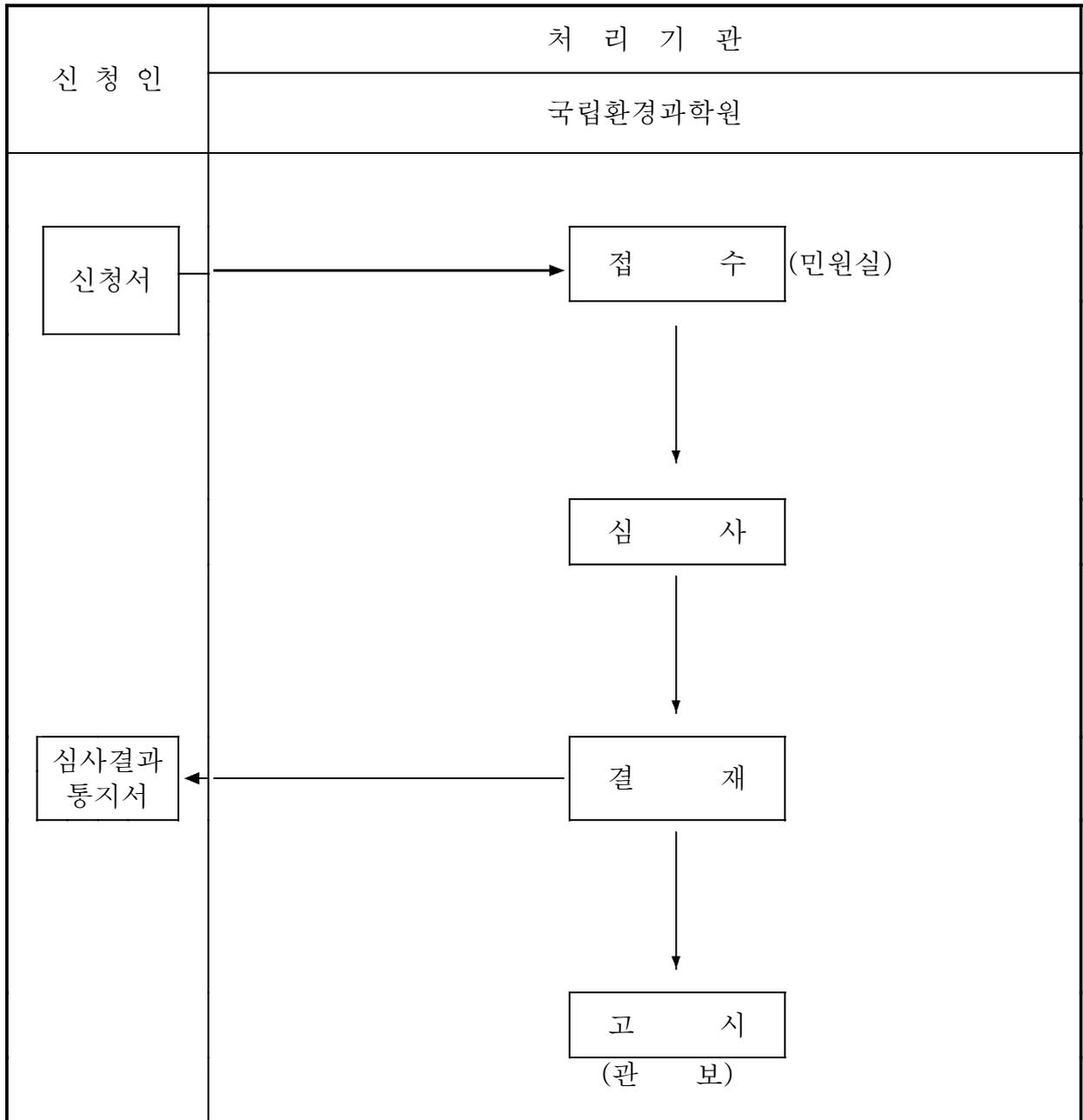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	(전화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 :)		
신청내용	⑦ 화학물질명 (총칭명)			
	⑧ 구조식		⑨ 순도	%
	⑩ 수입국		⑪ 연간 제조 (수입)예정량	kg
	⑫ 신고형태	<input type="checkbox"/> 1톤이하 <input type="checkbox"/> 고분자 <input type="checkbox"/> 2개국이상 등재 <input type="checkbox"/> 기타		
	⑬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주요용도	⑭ 신고물질의 기능			
	제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제품에 함유량(%)			
환경배출정보	⑮ 사용시설의 형태			
	일일평균 사용량			
	연간 예상사용 일수			
	매체별 예상 배출량			
	산출근거			

분류	항 목	제출여부	총 면 수	첨부서류번호
①⑥ 물 리 화 학 적 성 질	물 리 적 상 태			
	녹 는 점			
	끓 는 점			
	증 기 압			
	용 해 도			
	옥탄올물분배계수			
	기 타()			
①⑦ 급 성 독 성	급성경구독성시험성적서			
	급성경피독성시험성적서			
	급성흡입독성시험성적서			
	기 타()			
①⑧ 유 전 독 성	복귀돌연변이시험성적서			
	염색체이상시험성적서			
	기 타()			
①⑨ 분 해 성	이분해성시험성적서			
	기 타()			
②⑩ 수 생 생 태 독 성	어 류 독 성			
	물 벼 룩 독 성			
	조 류 독 성			
	기 타()			

※ 작성요령

1. ⑥란은 공장·창고·판매장 등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2. ⑩란은 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제 호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인	④ 주소(사업장)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심	⑥ 유독물 등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 <input type="checkbox"/> 관찰물질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사	표 시 사 항		
결	⑦ 유 해 그 림	⑧ 유 해 성	⑨ 취급시 주의사항
과	⑩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국립환경과학원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확 인 번 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⑤ 제품명(상품명)					
⑥ 화학물질명 또는 총칭명				⑦ CAS No	
⑧ 면제사유					
⑨ 확인조건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협 회 장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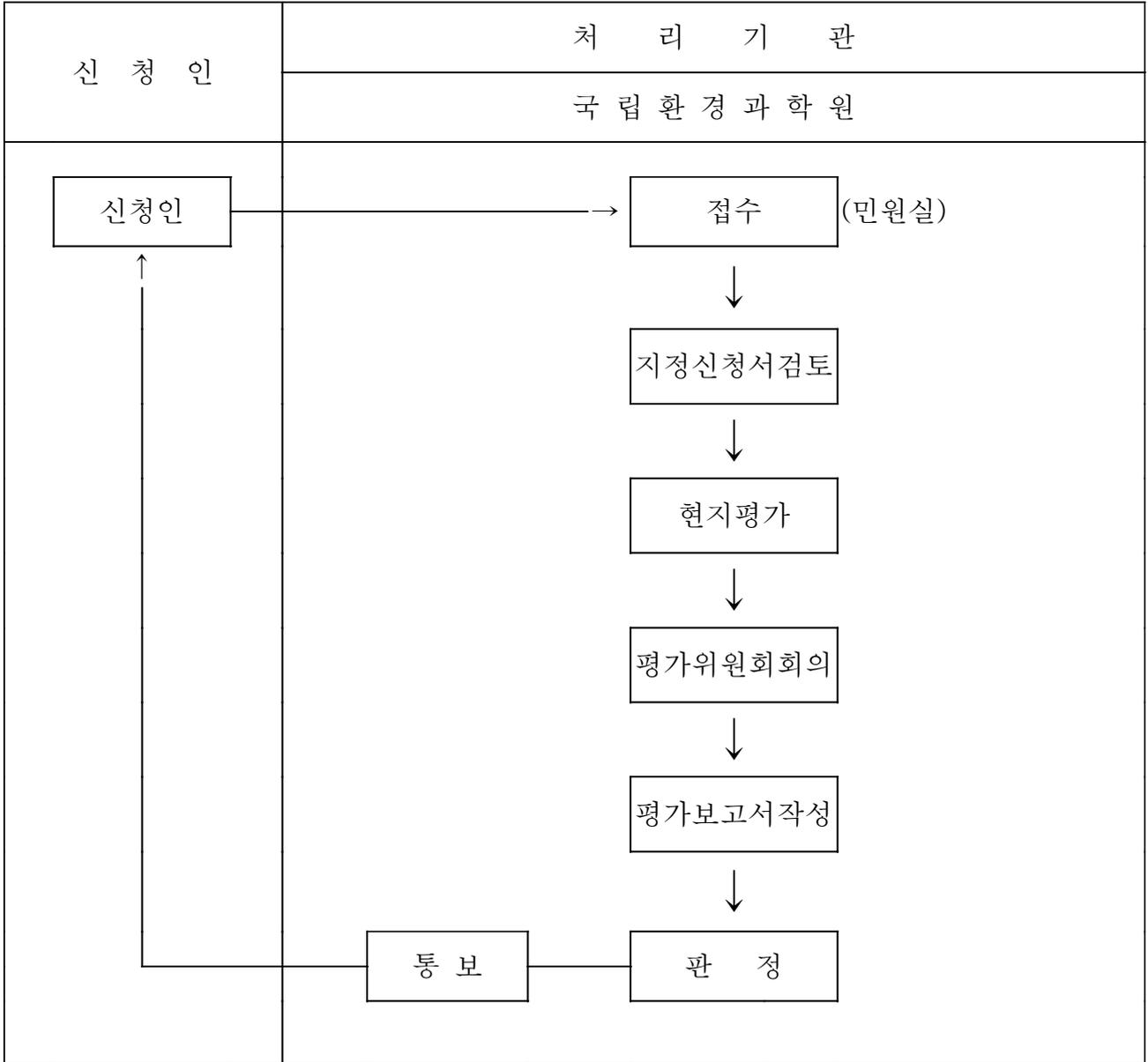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뒷쪽)

※ 작성요령

⑦란은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의 분야별 시험항목 중 지정 받고자 하는 세부시험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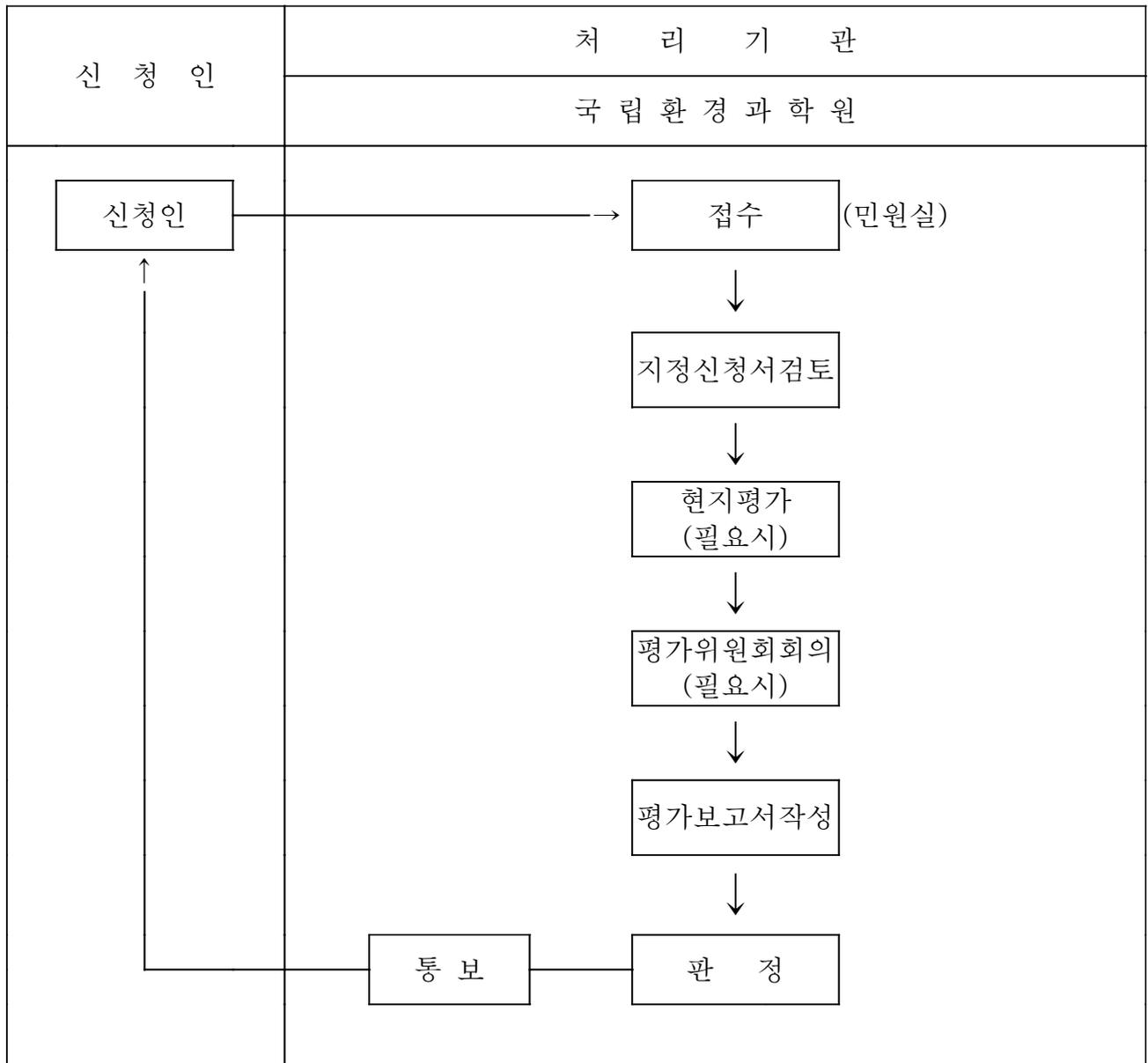


(뒷쪽)

※ 작성요령

⑥, ⑦란에 변경지정 받고자 하는 사항 전과 후를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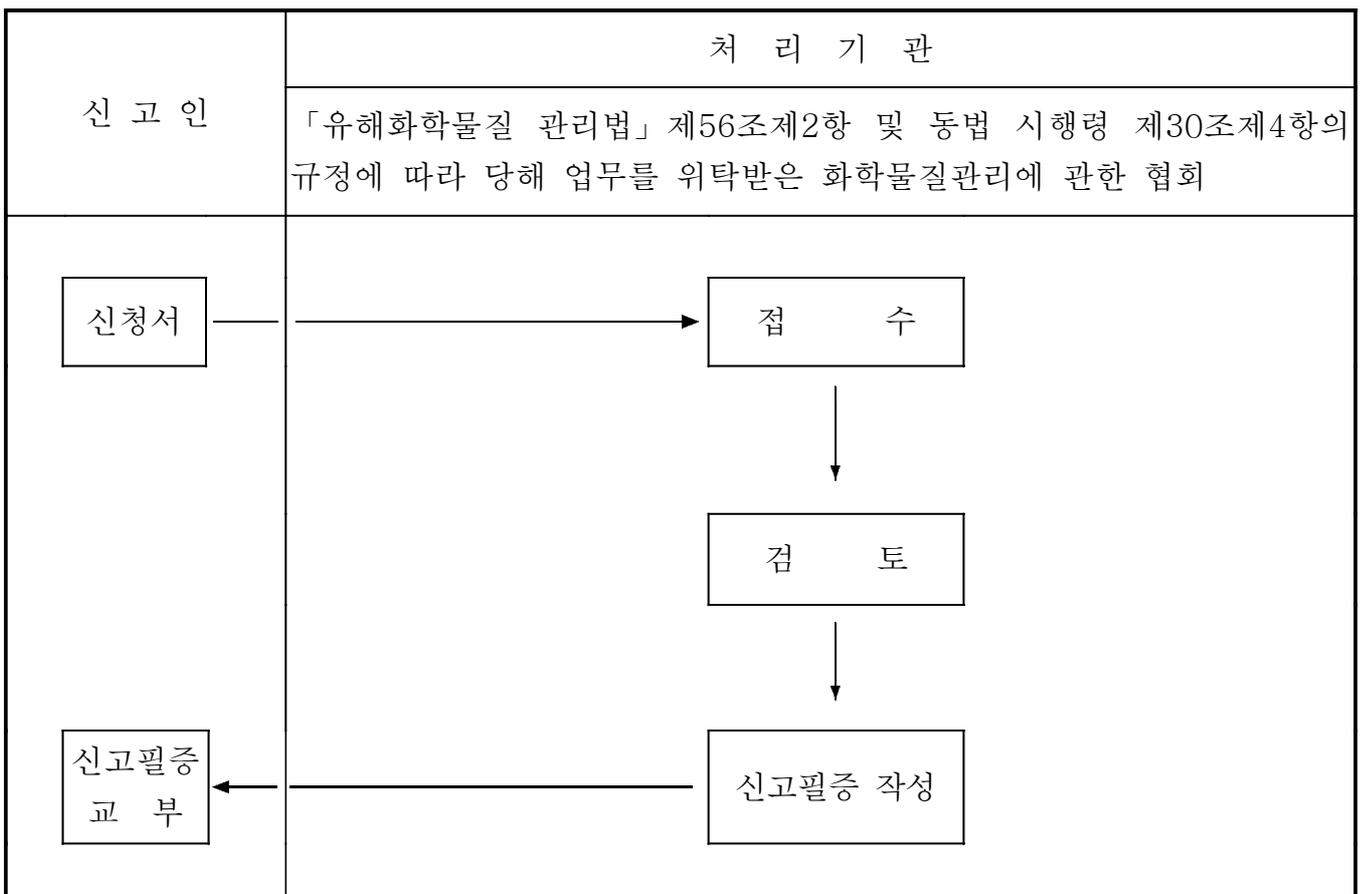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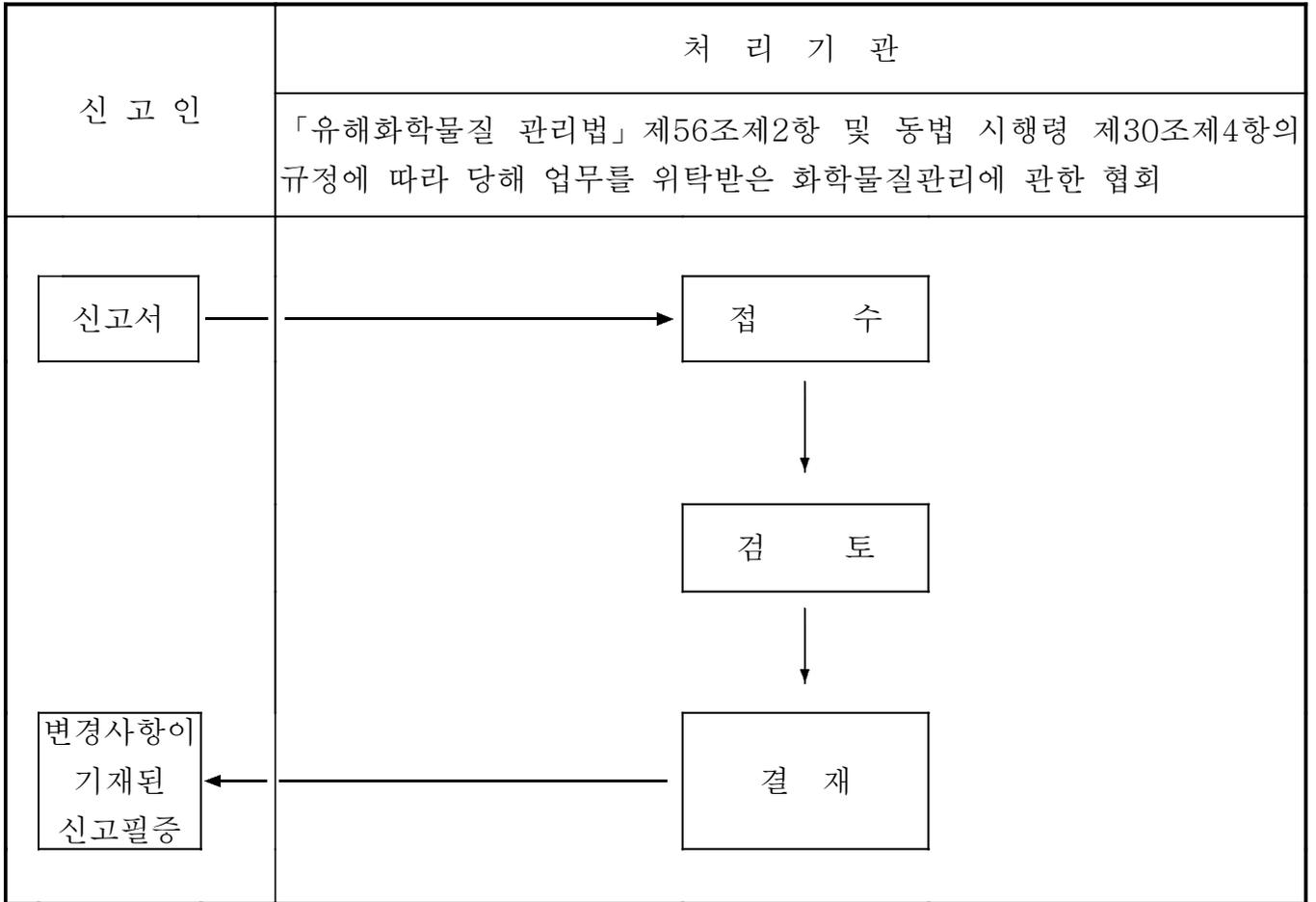
1. ⑥란은 수입제품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수입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4. ⑨란은 연간 수입총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5. ⑩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6. ⑪란 내지 ⑬란은 수입상품에 포함된 유독물을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7.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번호		유 독 물 수 입 신 고 필 증						
제 호								
신 고 인	①상 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사업장)	(전화 :)						
신 고 사 항								
⑤ 일자	⑥수입제품명 (상품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연간수입 예정량(kg)	⑩HSK No.	유독물 함유내역		
						⑪명칭	⑫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⑬함유량 (%)
⑭ 준 수 사 항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협회장 인</p>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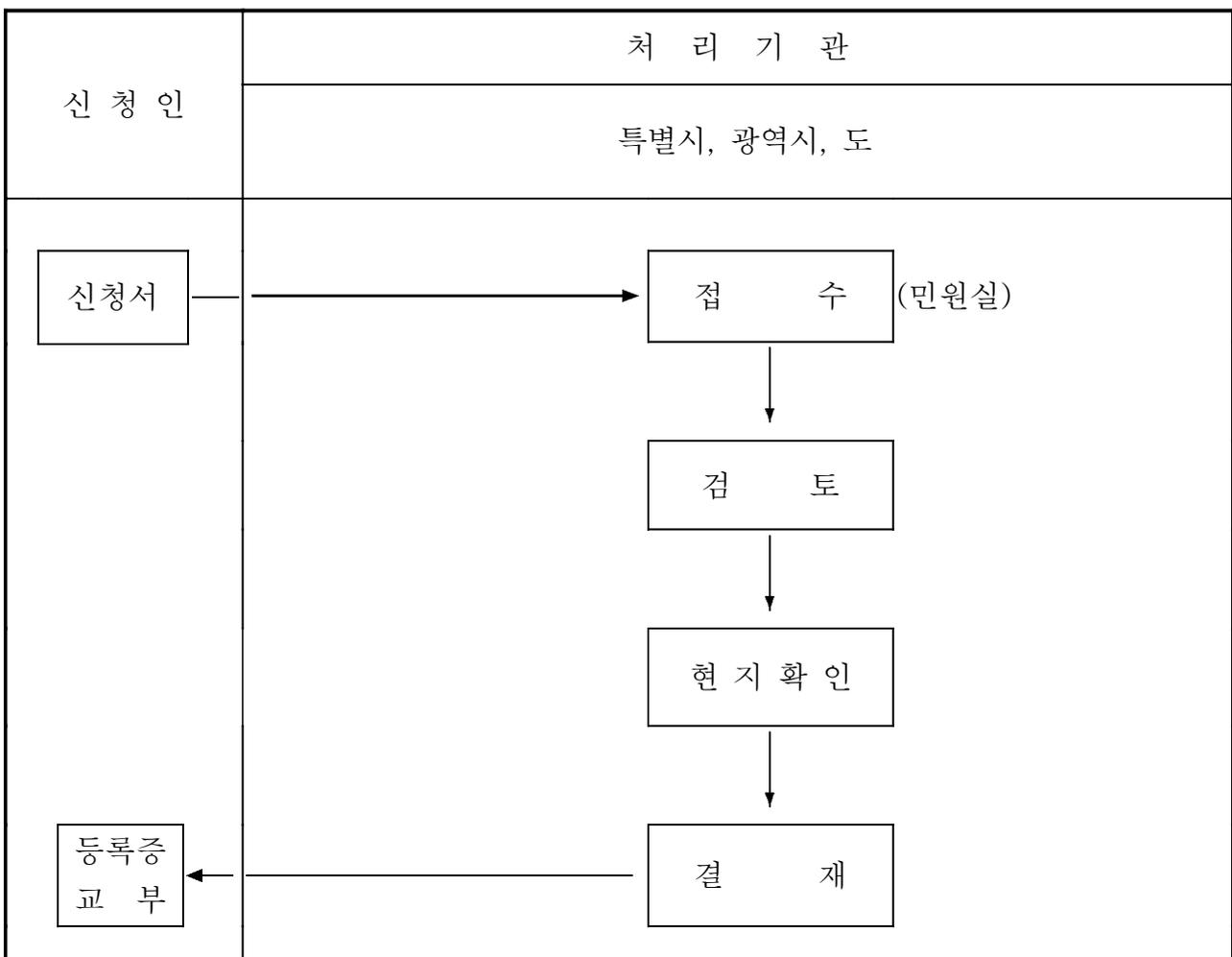


(뒤쪽)

※ 작성요령

1. ⑦란은 유독물의 취급품목중 다량 취급하는 1 내지 3개의 품목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⑧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예상하는 유독물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기재합니다.
3. ⑪란은 ⑥란의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합니다.
4. ⑫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합니다.
5. ⑬란은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유독물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6. ⑭란 및 ⑮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여부를 기재합니다.
7. ⑯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허가 번호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변경 <input type="checkbox"/> 등록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신 고 서	처 리 기 간	
			변경등록 변경허가	7일 (판매:5일)
제 호			변경신고	3일
신 (신 청 고 인 인)	① 상 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⑥ 영 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수입업(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한함)			
변 경 사 항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2항 제34조제4항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을/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수 수 료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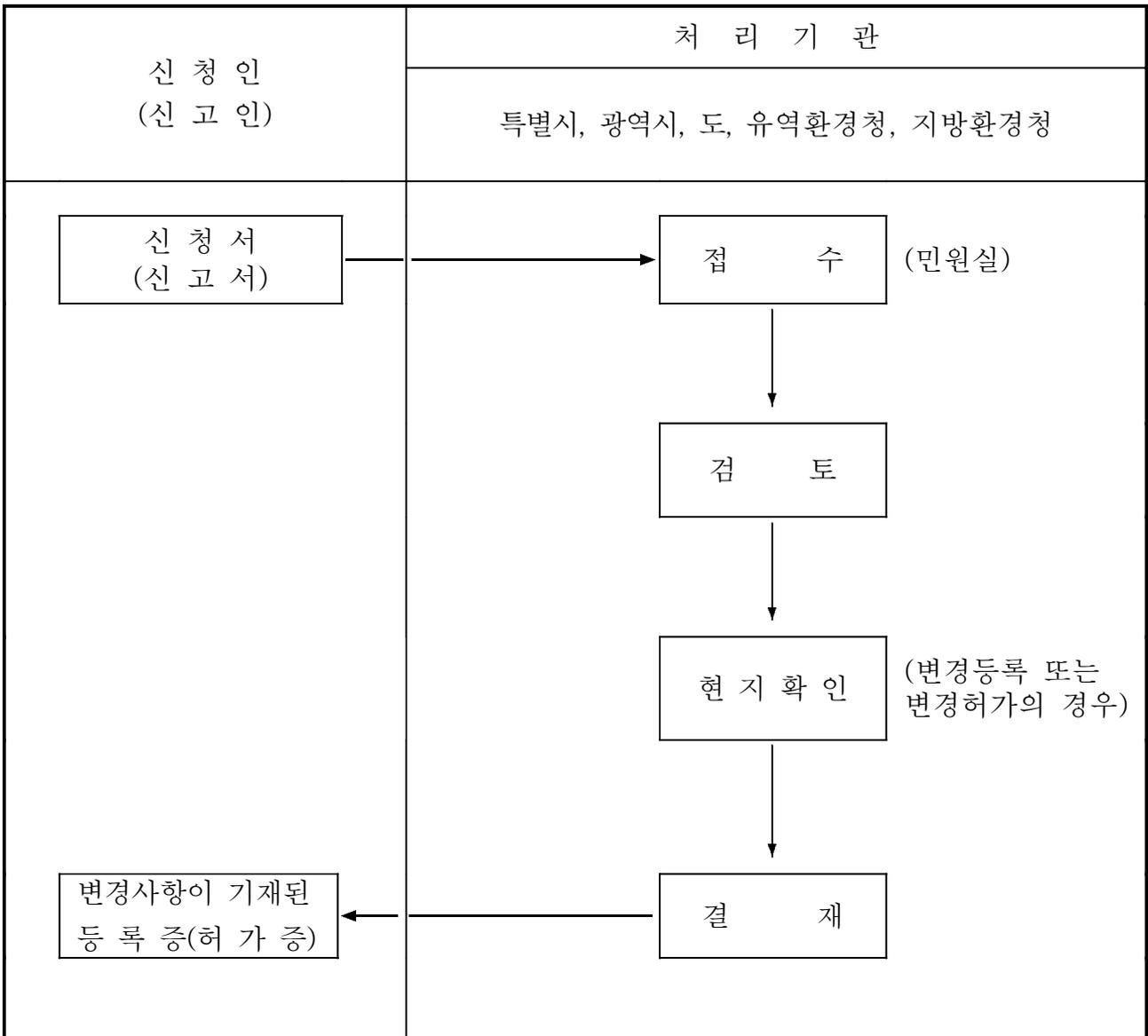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등록·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시 부여된 등록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하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⑦란의 내용중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4.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신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신고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허가	번호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독 물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등록증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제	호					
신 청 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사업장)		(전화 :)			
⑤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 :)				
⑥ 주요취급품목명				⑦ 전체연간취급량	Ton 또는 m ³	
⑧ 종 업 원 수		명		⑨ 사업장 면적	m ²	
⑩ 보관·저장시설능력		Ton 또는 m ³		⑪ 운반장비능력	Ton 또는 m ³	
⑫ 저장 시설 현 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 (m ³)	저 장 화 학 물 질			
			명 칭	1일평균사용량	주 요 용 도	
⑬ 관 리 자 공 동 활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⑭ 취 급 시 설 공 동 활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⑮ 자 체 방 제 계 획 수 립 대 상 여 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⑯ 수 입 또 는 취 급 제 한 금 지 물 질 품 목		
⑰ HSK No.				⑱ 수 출 국		
⑲ 수출자 상호						
⑳ 등 록 (허가) 조 건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제34조제1항의 제20조제1항의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input type="checkbox"/> 등록 번호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제 호					
신청인	① 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취급시설		<input type="checkbox"/> 제조시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시설 <input type="checkbox"/> 운반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⑦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명 칭	연간취급량(Ton)	주 요 용 도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3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정기·수시 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 첨부서류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수 수 료 환경부장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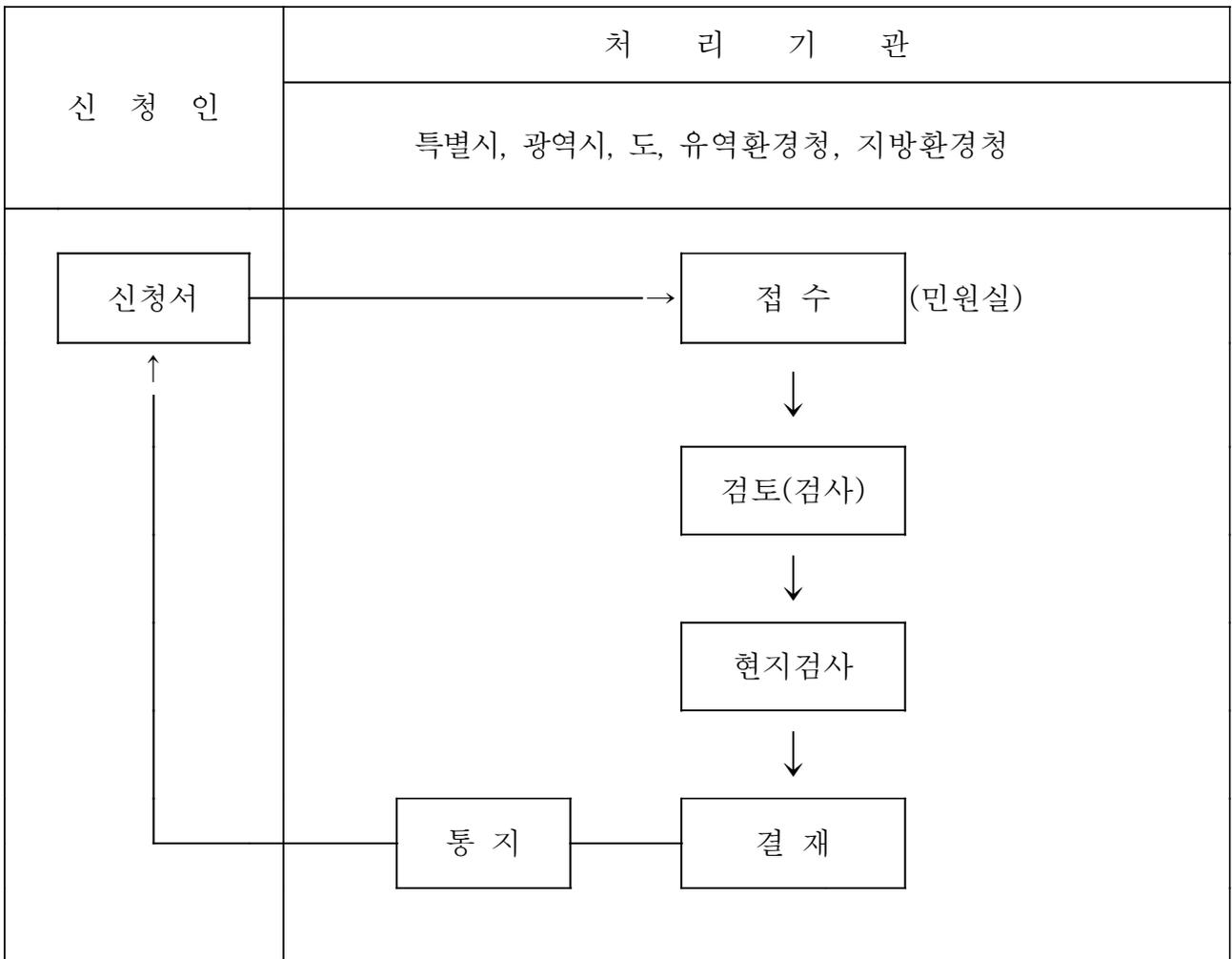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등록·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허가시 부여된 등록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유독물취급시설은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

신	① 상 호 (명 칭)			
	청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인		④ 주소(사업장)	(전화 :)	
⑤ 검 사 결 과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내 용	적·부	조치할 사항
⑥ 안전진단의 필요성 여부				

기관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명령서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제34조제5항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귀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 독 물 취급시설에
 취급제한·금지물질

대한 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을 것
제34조제5항 제34조제5항

을 명합니다(안전진단 신청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2. 따라서 귀 업소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신
청을 하여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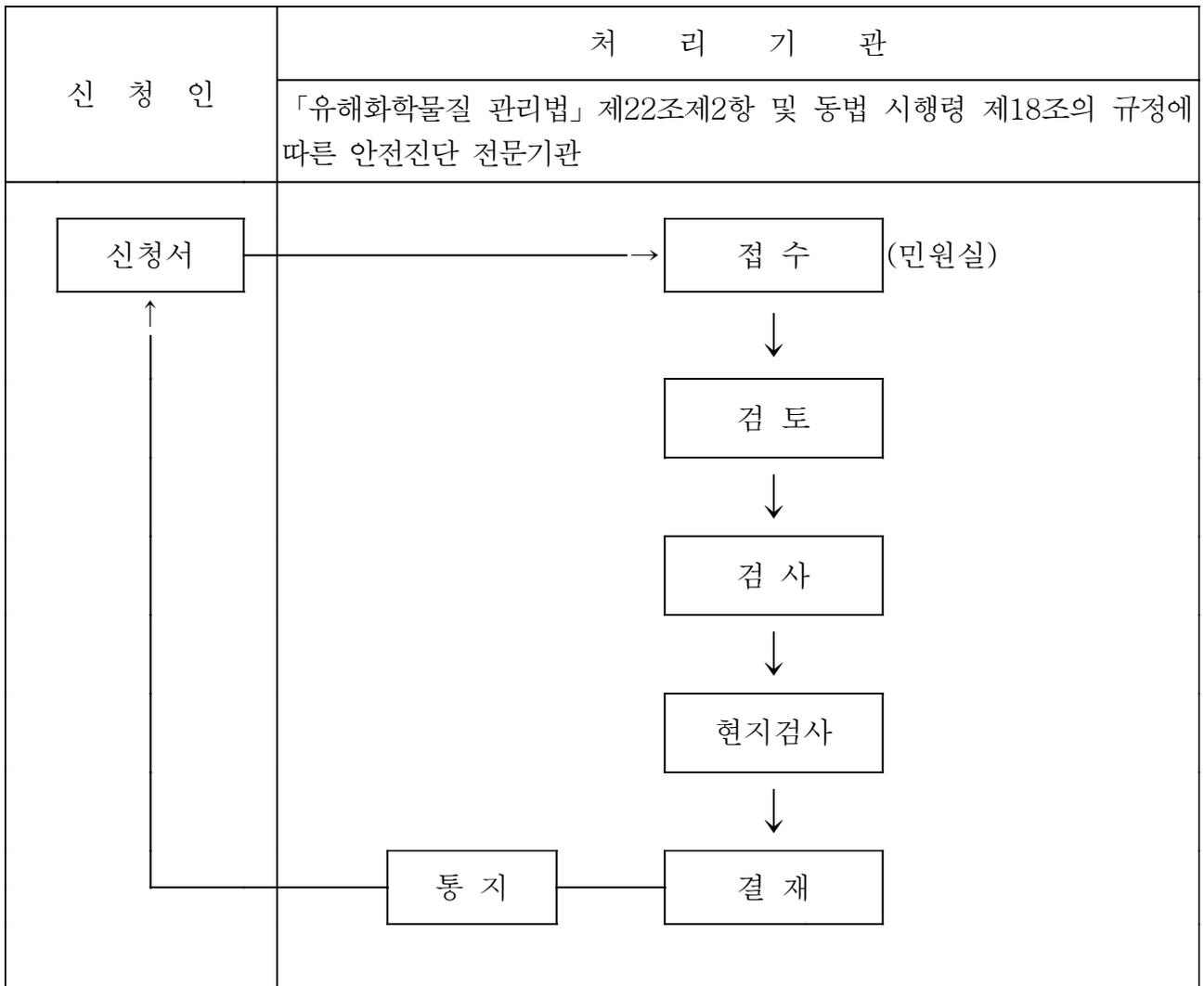
/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허가 번호 체 호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신 청 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등록(허가)업종			
⑦안전진단명령번호		⑧안전진단명령일	년 월 일
⑨안전진단 신청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제34조제5항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div>			
※ 첨부서류 1. 안전진단명령서 1부 2. 정기(수시) 검사결과 통보서 1부 3.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수 수 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보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신청번호 (안전진단신청일)	
	③ 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진단 결과				
진단항목	진단기준	진단내용	적부	조치할 사항
⑦ 개선명령 필요성 여부				
⑧ 진단자직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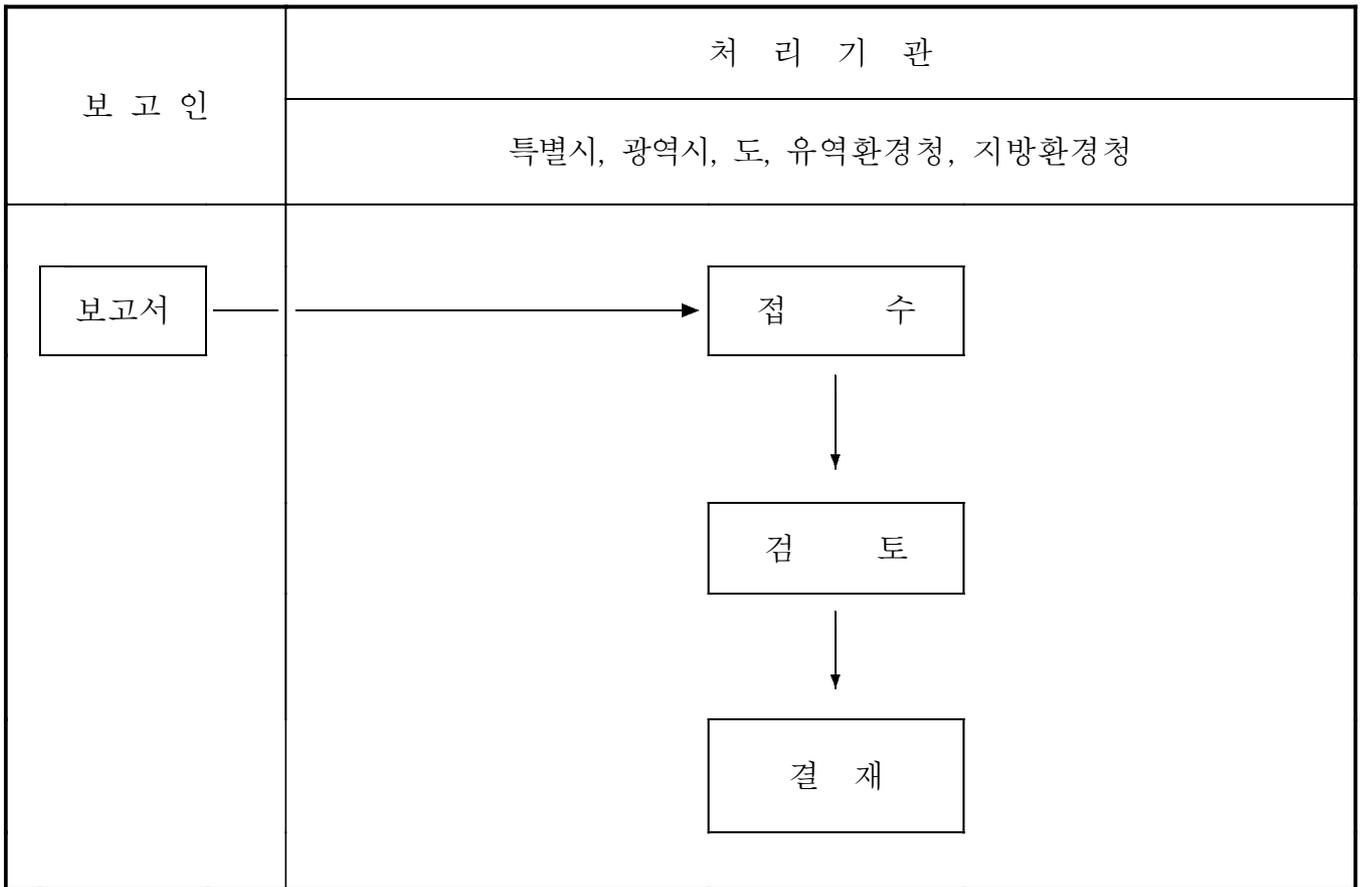
명령 번호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 호				
보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등록(허가) 업종				
⑦ 개선명령 이행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인	
귀 하				

(뒤쪽)

※ 작성요령

1. 명령번호는 안전진단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2. 유독물영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관리자 선임서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선 임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임기간	자격증 소지여부	비 고
⑦ 기타 교육이수 등				
구분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과정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양성자 과정		
교육 기간				
상기인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른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관리자로 선임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업체명(대표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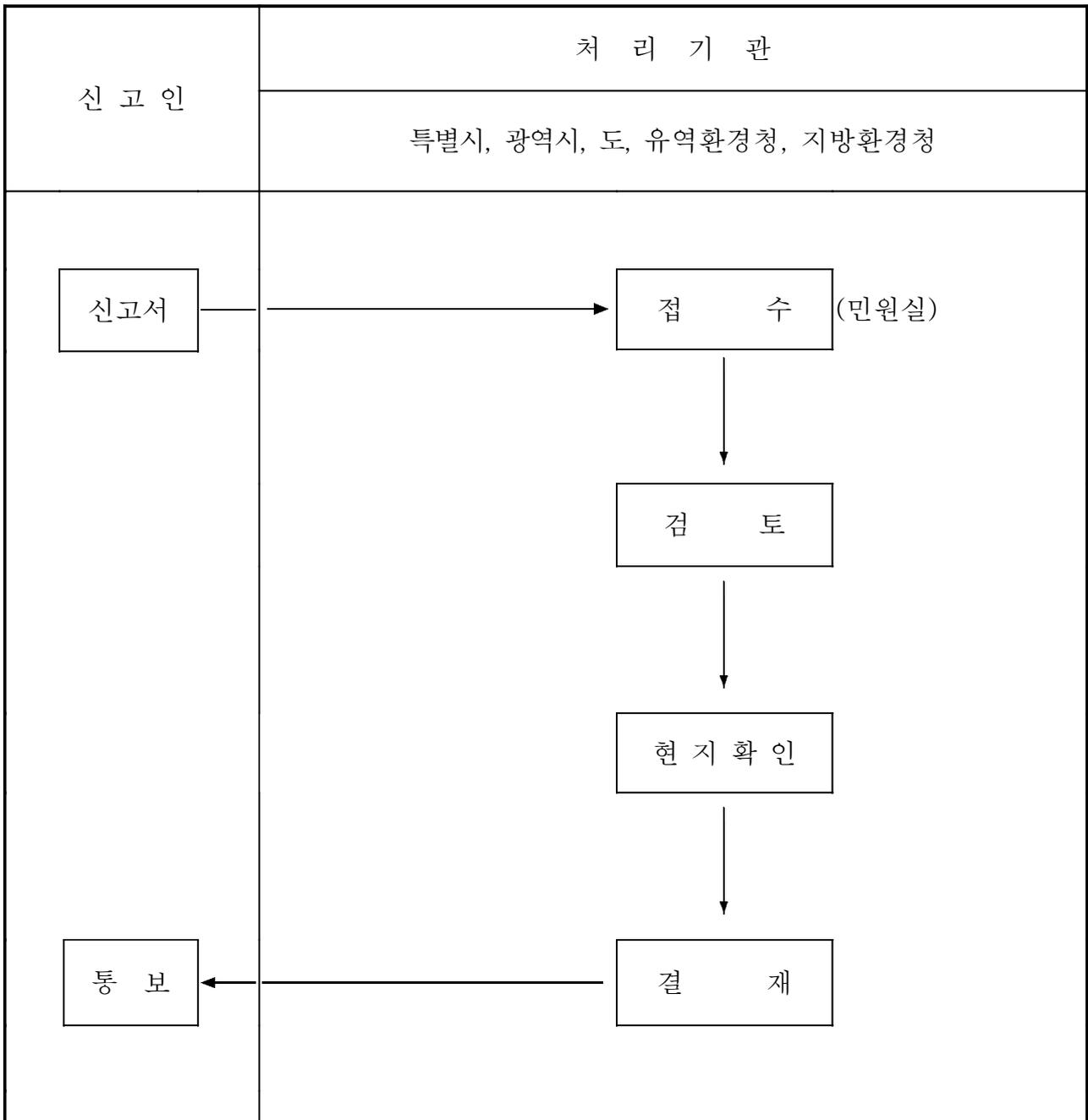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등록·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시 부여된 등록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유독물영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input type="checkbox"/> 등록 번호 <input type="checkbox"/> 허가 제 호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승 계 사 유						
신 고 사 항						
구 분		승 계 전		승 계 후		
⑦ 상 호 (명 칭)						
⑧ 성명(대표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제34조제5항 제34조제5항 따라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영 업 <input type="checkbox"/>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3. 권리·의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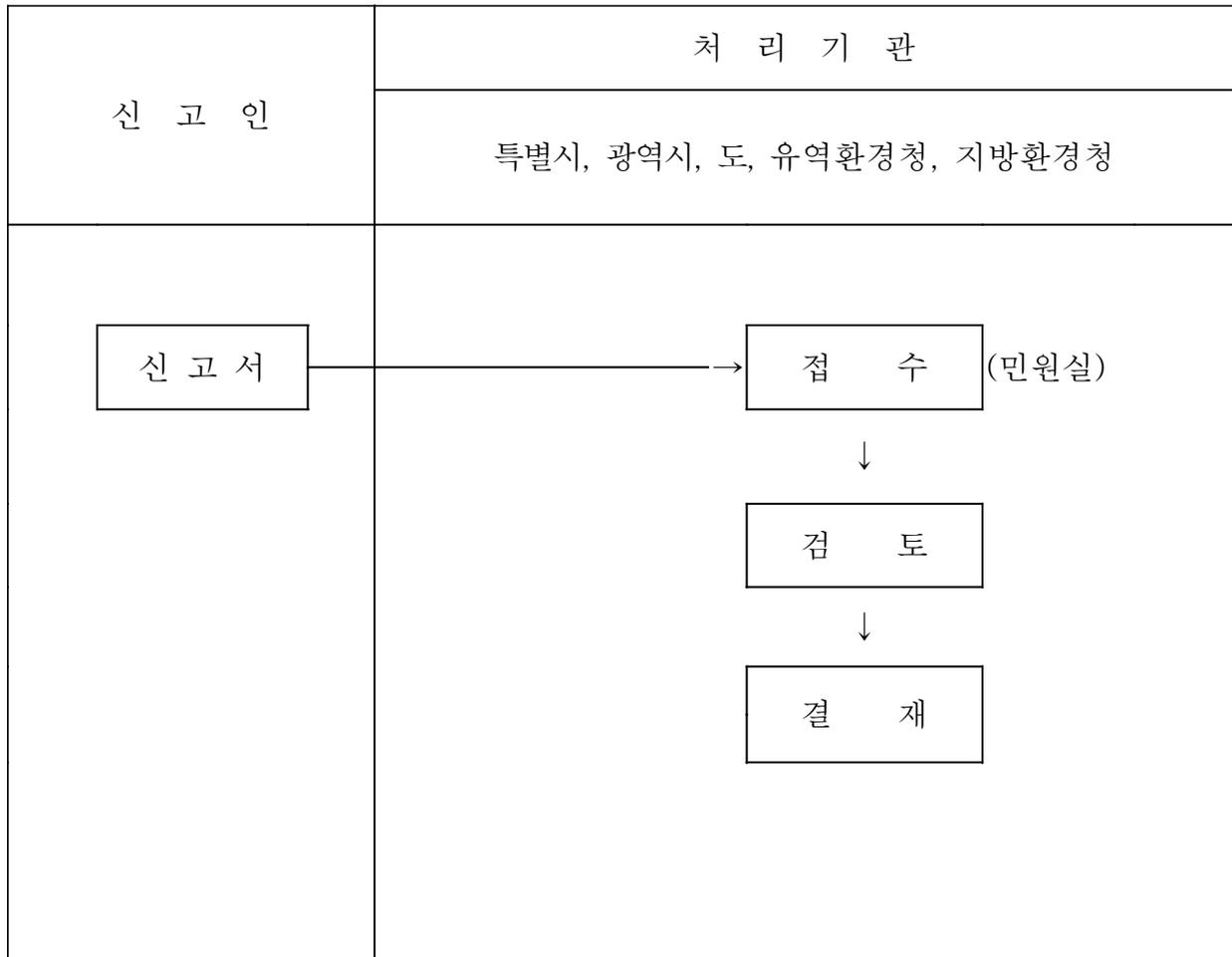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유독물영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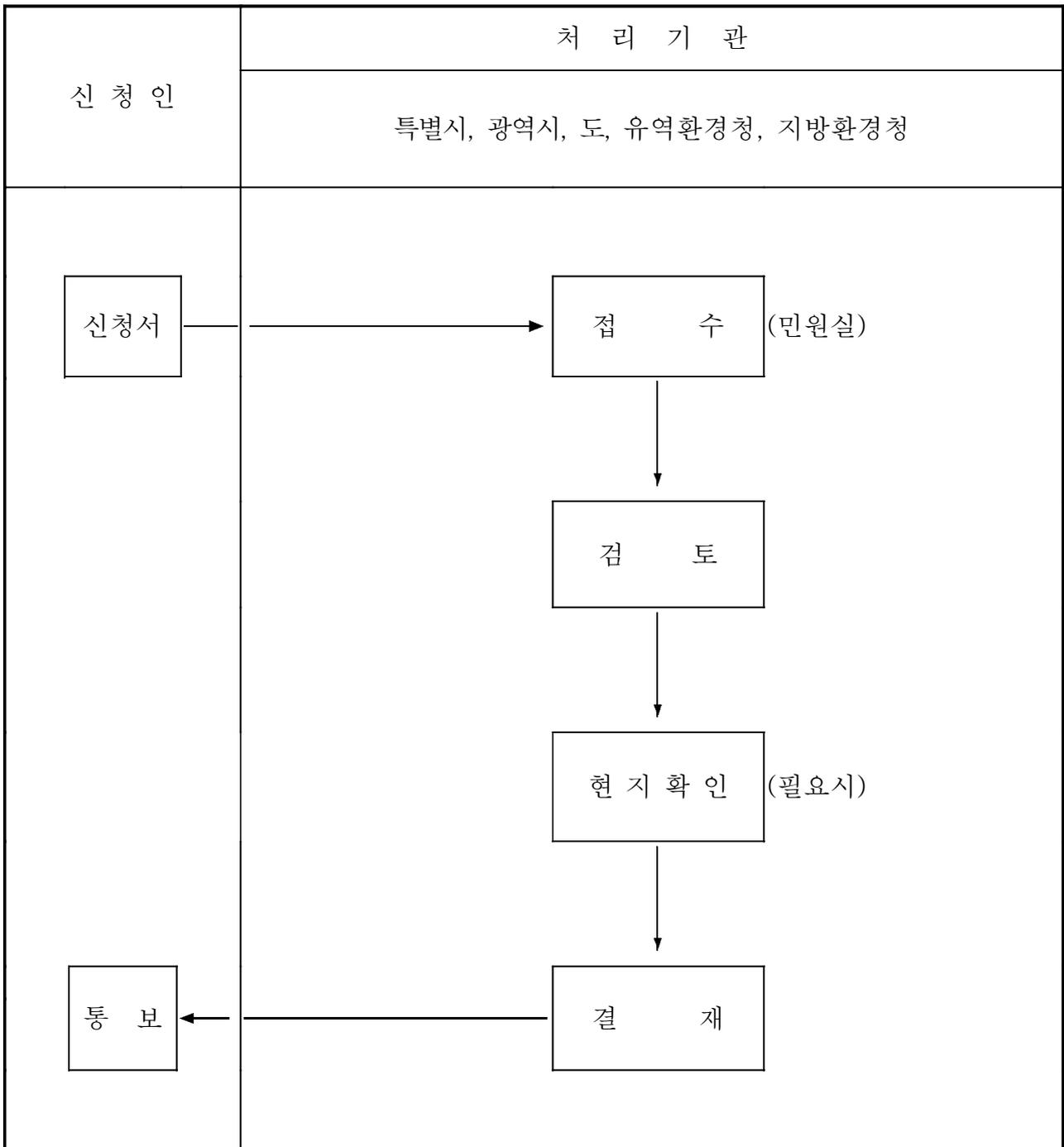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작성요령

1. 등록·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시 부여된 등록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유독물영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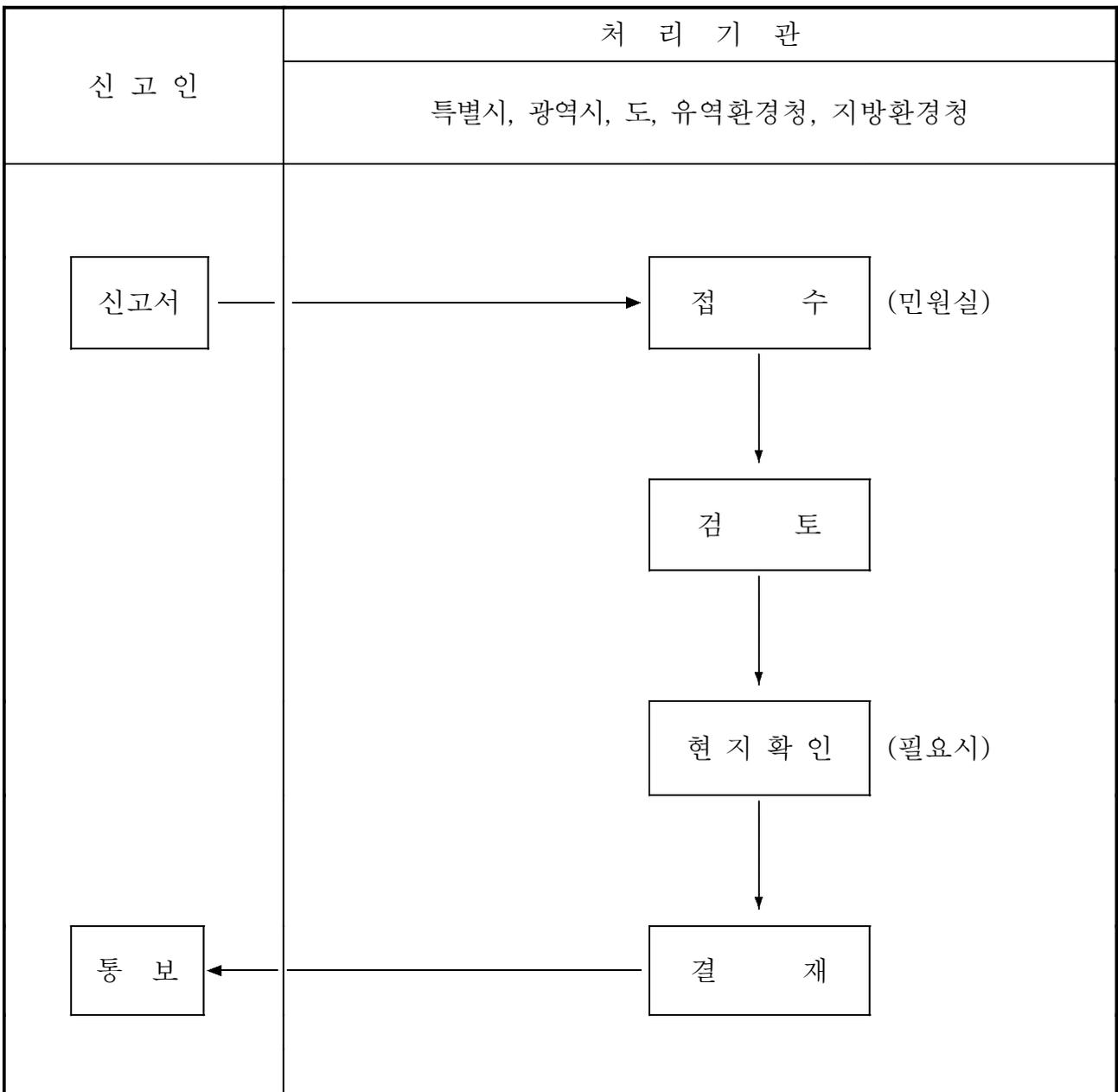


(뒤쪽)

※ 작성요령

1. 등록·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시 부여된 등록 또는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유독물영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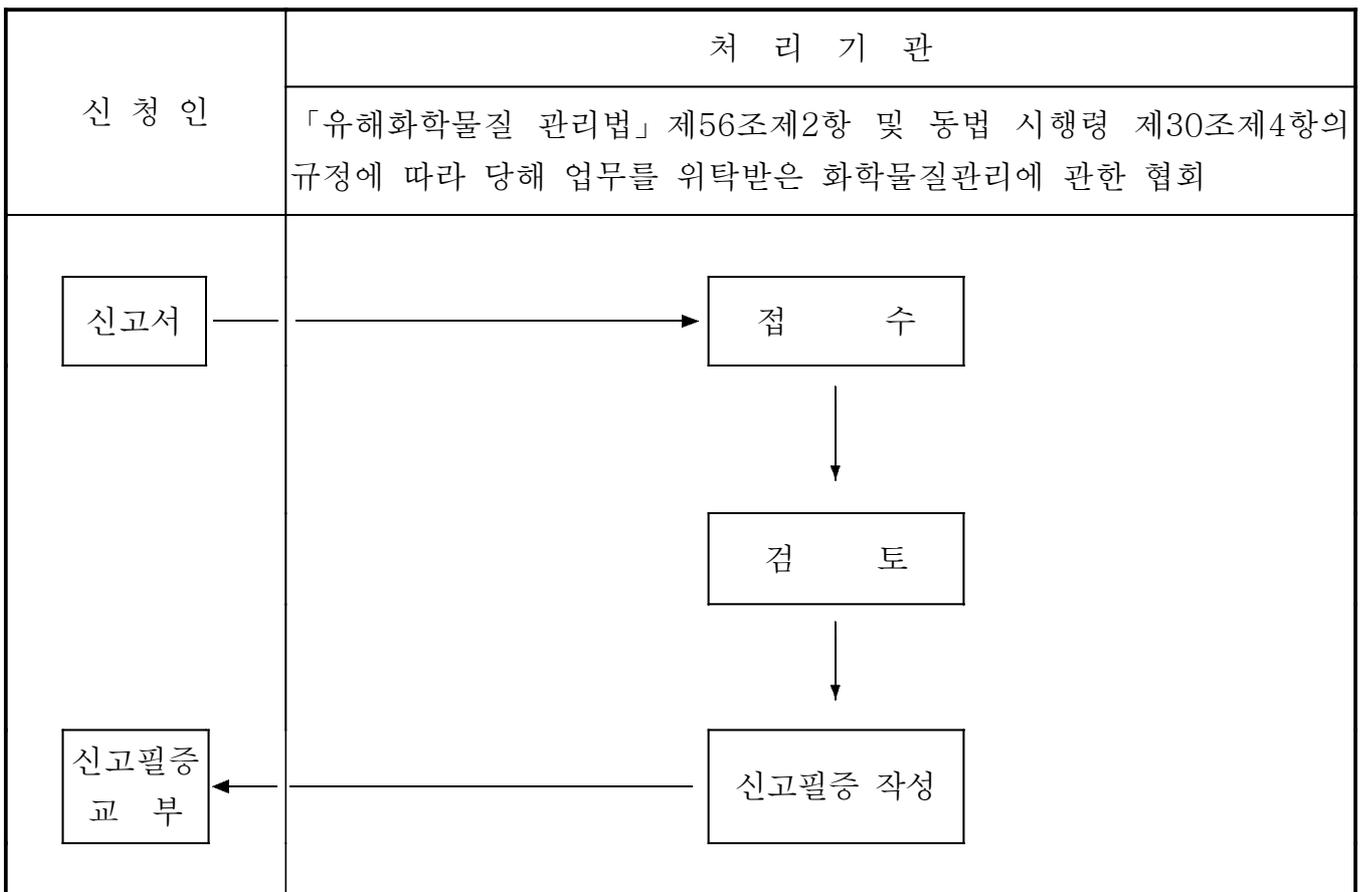
관 찰 물 질 <input type="checkbox"/> 제 조 신 고 서 <input type="checkbox"/> 수 입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상 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주소(사업장)	(전화 :)					
신 고 내 역							
⑥제품명 (상품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연간제조· 수입예정량 (kg)	⑩HSK No.	관찰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 수 료		
					13,000원 (매품목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협회장 귀하 </div>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1. ⑥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⑦란은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그 상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4. ⑨란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총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5. ⑩란은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 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6. ⑪란 내지 ⑬란은 제조 또는 수입상품에 포함된 관찰물질을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7.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번호		관찰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신고필증						
제 호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사업장)	(전화 :)						
신 고 사 항								
⑤ 일 자	⑥제품명 (상품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연간제조수 입예정량 (kg)	⑩HSK No.	관찰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함유량 (%)
⑭ 준 수 사 항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협회장 인</p>								

[별지 제3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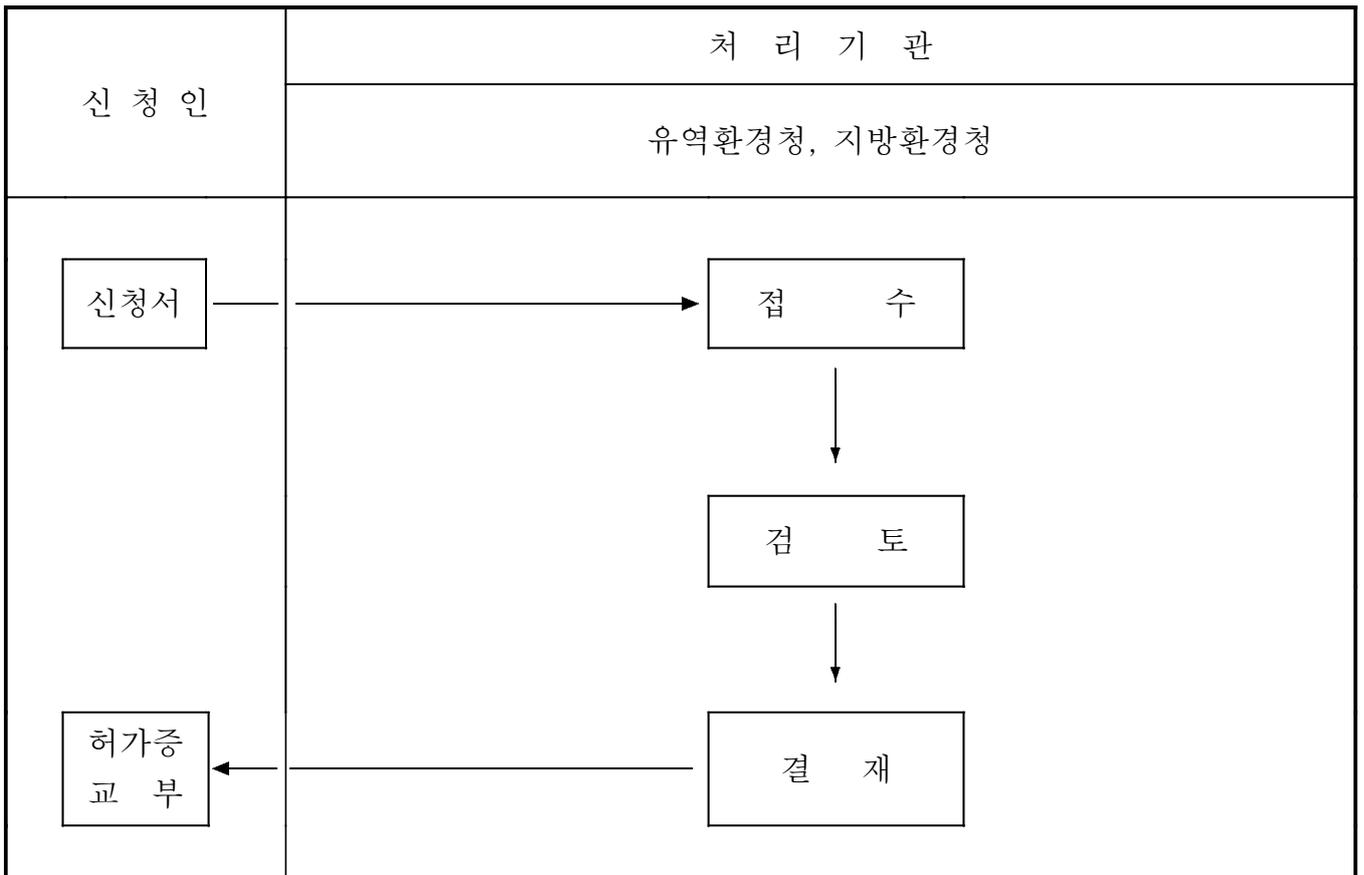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신청내역							
⑥수입제품명 (상 품 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연간수 입예정 량(kg)	⑩ HSK No.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취급제한· 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⑬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13,000원 (매품목당)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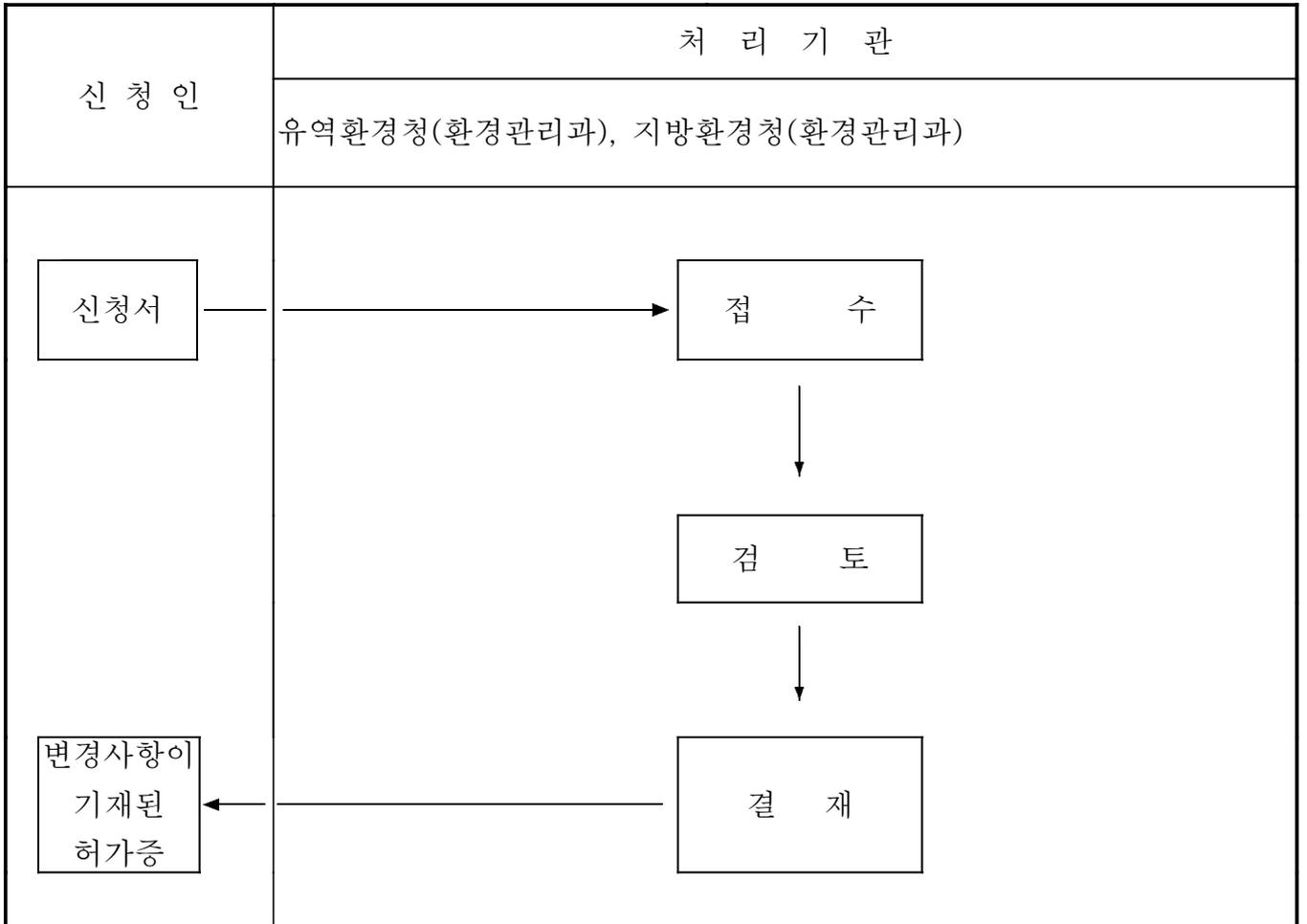
1. ⑥란은 수입상품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수입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4. ⑨란은 연간 수입총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5. ⑩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6. ⑪란 내지 ⑬란은 수입상품에 포함된 유독물을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7.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증						
제 호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전화 :)					
신 청 사 항								
⑤일자	⑥ 수입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주요용도	⑨ 연간수입 예정량 (kg)	⑩ HSK No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 취급제한·금지 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⑭ 준 수 사 항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신청을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장 인</p>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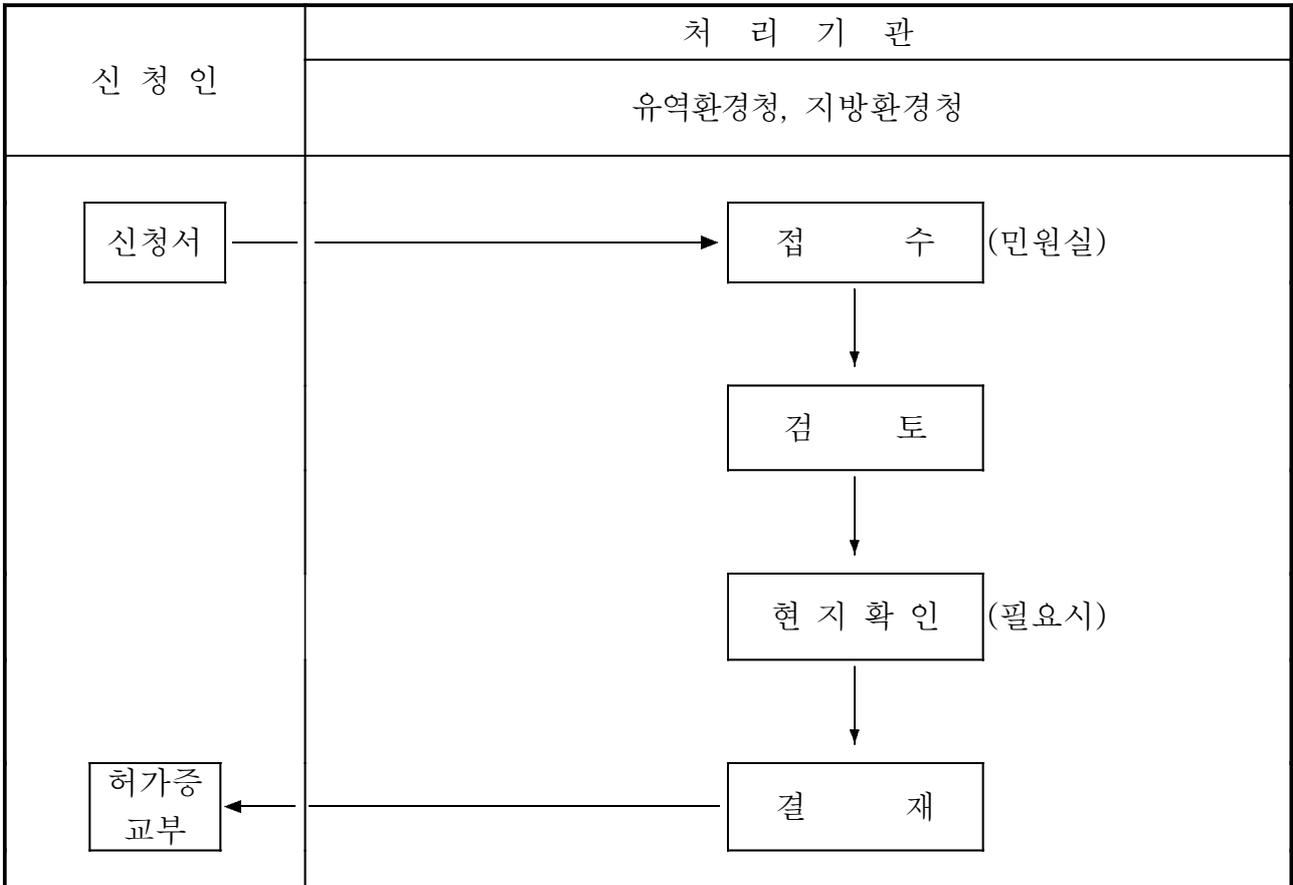
취급제한·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수입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주소(사업장)		(전화 :)		
⑥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 :)			
⑦ 주요취급품목명		⑧ 전체연간취급량		Ton 또는 m ³	
⑨ 종 업 원 수		명	⑩ 사업장 면적		
⑪ 보관저장시설능력		Ton 또는 m ³		⑫ 운반장비능력	
⑬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m ³)		
			저 장 화 학 물 질		
			명 칭	1일평균사용량	주 요 용 도
⑭ 관 리 자 공 동 활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⑮ 취 급 시 설 공 동 활 용 여 부	
⑯ 자 체 방 제 계 획 수 립 대 상 여 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2.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 는 자에 한합니다) 1부				수 수 료	
				13,000원	

(뒤쪽)

※ 작성요령

1. ⑦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취급품목중 다량 취급하는 1 내지 3개의 품목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⑧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예상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기재합니다.
 3. ⑪란은 ⑥란의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합니다.
 4. ⑫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합니다.
 5. ⑬란은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6. ⑭란 및 ⑮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여부를 기재합니다.
 7. ⑯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⑪란 내지 ⑮란은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허가번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제 호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보관저장시설소재지		(전화 :)			
⑦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 ³	⑧종업원수		명
⑨사업장 면적		m ²	⑩운반시설능력		차량대수 톤 또는 m ³
⑪보관시설능력		톤 또는 m ³			
⑫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 (m ³)	저장화학물질		
			명 칭	1일평균사용량	주요용도
⑬취급품목(취급제한, 금지로 구분기재)					
⑭수입 취급제한금 지물질품목				⑮HSK.NO	
⑯수 출 국				⑰수출자상호	
⑱등록(허가)조건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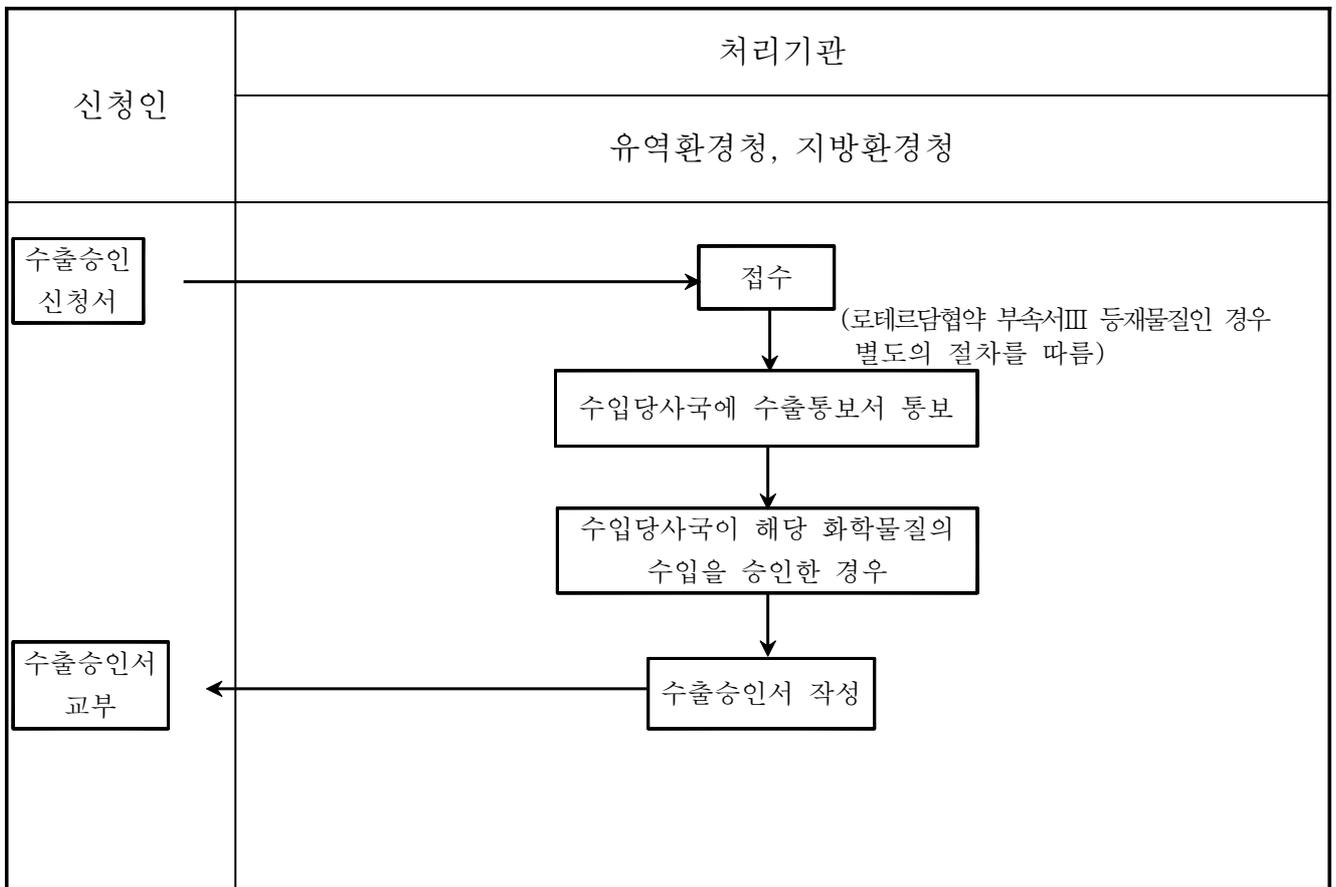
(앞쪽)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이내
신청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수출제품명 (상 품 명)		⑦ 주요용도		
⑧ 당해연도 수출예정량		kg	⑨ HSK No.	
⑩ 수 입 국		⑪ 수입자 상호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 내역	⑫ 명 칭		⑬ CAS No.	⑭ 함유량 (%)
				⑮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여부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수출자 책임보증서, 수출통보서(2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2부)				수 수 료
				13,000원
비고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인 경우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출제품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수출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3. ⑧란은 당해 연도의 수출총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4. ⑨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5. ⑩란 및 ⑪란은 수입국 및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6. ⑫란 내지 ⑮란은 수출상품에 포함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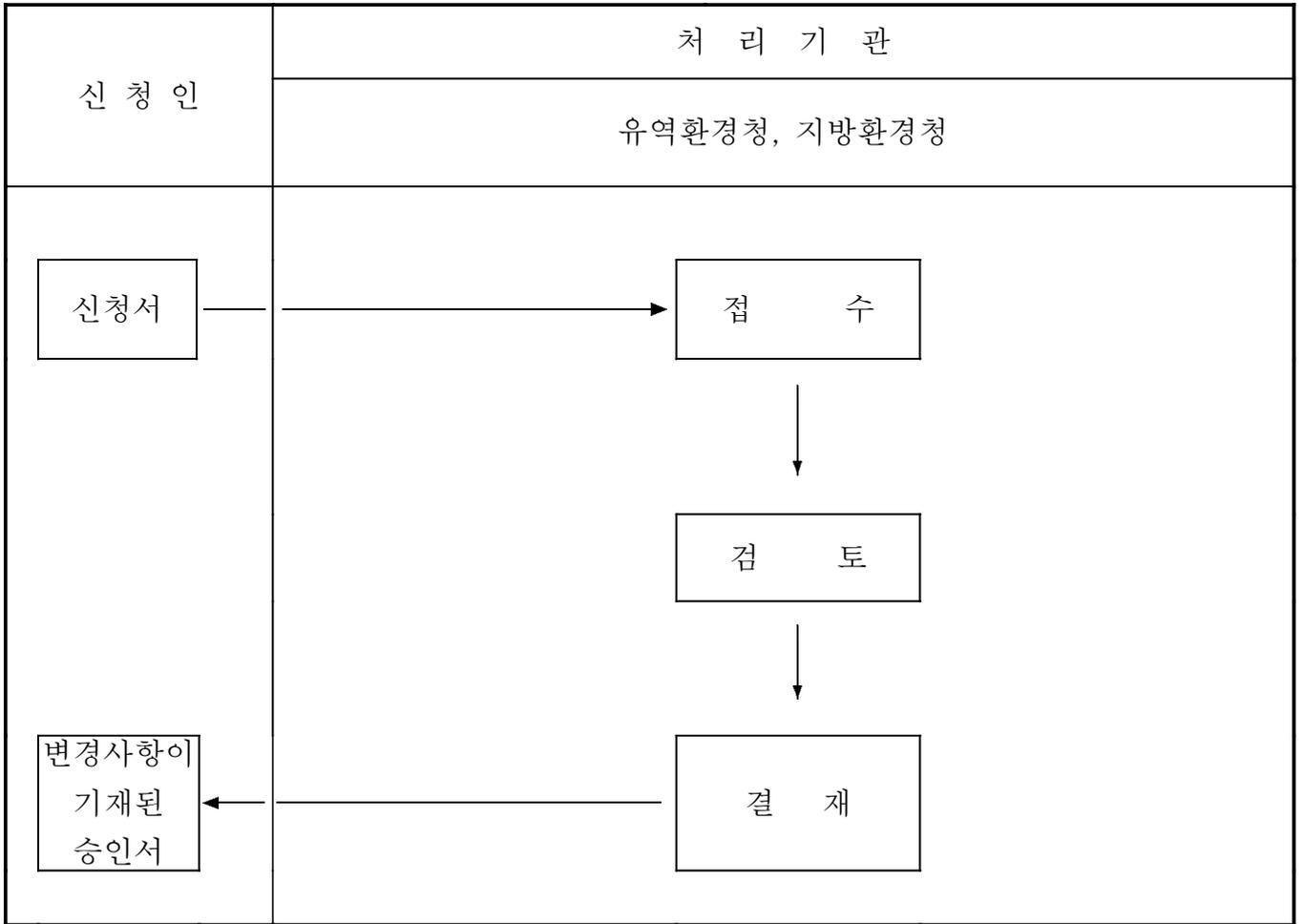
[별지 제36호서식]

신청번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서	
제 호			
신청인	① 상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⑥ 수출제품명 (상 품 명)		⑦ 주요용도	
⑧ 당해연도 수출예정량	kg	⑨ HSK No.	
⑩ 수 입 국		⑪ 수입자 상호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 내역	⑫ 명 칭	⑬ CAS No.	⑭ 함유량(%)
유효기간	년 12월 31일까지		
유효조건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유역(지방)환경청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승인번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제 호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수출제품명(상품명)					
변경사항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p>					
※ 첨부서류				수 수 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000원	
2. 승인서 원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8호서식]

00년 0월 0일, 00:00현재(최초, 중간, 최종)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사고보고서

1. 사고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시 분(요일)

나. 장 소 :

다. 사고내용

○

라. 사고원인

○

마. 사고시설 현황(유발자 현황)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00명(사망 0명, 중상 0명 경상 0명 등)

나. 재산피해 :

3. 수습(조치)현황

가. 사고접수시간 :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0000 → 접수자 0000)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 자	시 간	주 요 조 치 내 용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 00명(기관별 동원인력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동원장비 : 00대(소방차, 탱크로리 등 현장수습 활동에 동원된 장비를 상세히 기록함)

니다)

○ 방제장비

- 오일웬스·흡착포·유처리제·방제약품 등 그 밖의 장비·자재 동원 내역

4. 사고관리

가.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

○ 대기 :

○ 수질 : 수계 및 취·정수장에 미친 영향

○ 토양 : 주변 주거지역 등 오염현황 등

○ 주변 주거지역 주민 피해 현황

나. 사고지역 사후관리 활동

○ 오염토양 제거, 주민피해 보상 조치 등

5.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 자	관련법령	조 치 내 용	조 치 기 관

6. 사고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발생 원인 :

○ 재발방지 대책(향후 조치계획 등)

7. 기타

○ 언론취재여부 등

【비고】

1. 사고보고는 최초·중간·최종보고로 구분하되 최초보고는 사고발생 개요와 피해현황을 정리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최종보고는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사고 유발자 등의 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사고발생 원인, 사고지역 관리방법,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1)]

유독물 수입 실적보고(년도분)

신고번호 : 제 호

보	① 상 호 (명 칭)			
고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인	④ 주 소	(전화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⑥ 사 업 장 경 유 하 천		()		

⑦ 유독물 수입 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명	유독물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유 독 물 번 호 또는 CAS No.
⑧ 합 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4)]

취급제한·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판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 <input type="checkbox"/> 운반 <input type="checkbox"/> 사용		실적보고 (년도분)				
보	① 상 호(명 칭)							
고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인	④ 주 소	(전화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⑥ 허가·승인번호		제 호	⑦ 허가·승인일자	년	월	일		
⑧ 보관·저장시설현황		시 설 수		총 용 량				
⑨ 사 업 장 경 유 하 천		()						
⑩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취급제한· 금지물질명	함유량(%)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취급제한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상온·상압에 서의 상태		
						고 체	액 체	기 체
⑪ 합 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1)]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

주요용도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명 : 1.

2.

3.

합 량 : 1. % 2. % 3. % (단위 : 톤/년)

입고량								출고량						재 고 량	비 고	
연 월 일	이 월 량	제조·수입·구 입량		구입내역				연 월 일	사용·판매량		판매내역					
		구분	수량	상 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 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297mm×210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2)]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

주요용도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명 : 1.

2.

3.

함 량 : 1. %

2. %

3. %

(단위 : 톤/년)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 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297mm×210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3)]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

주요용도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명 : 1.

2.

3.

함 량 : 1. %

2. %

3. %

(단위 : 톤/년)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97mm×210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발행번호		고 지 서 원 부 (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회계연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 징수관명				
						국고 계좌 :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환 경 부	관	항	목				
과목	과징금				년도 월					
납 기 내 금 액						징수금산출근거				
납기후금액(납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유독물 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입징수관 : 세입징수관명

직 인

발행번호		고지서점영수증서(납입자)				납기일자				
회계연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 징수관명				
						국고 계좌 :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환 경 부	관	항	목				
과목	과징금				년도 월					
납 기 내 금 액						징수금산출근거				
납기후금액(납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유독물 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세입징수관명

직 인

발행번호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회계연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 징수관명 국고 계좌 :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환	경	부	관	항	목	
과목	과징금				년도 월				
납 기 내 금 액					세입징수관 귀하				
납기후금액(납기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영수인
 ()우체국
 ()출납공무원

발행번호		납 부 서(한국은행용)				납기일자			
회계연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 징수관명 국고 계좌 :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환	경	부	관	항	목	
과목	과징금				년도 월				
납 기 내 금 액					한국은행장 귀하				
납기후금액(납기 :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영수인
 ()우체국
 ()출납공무원

자료보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기간에 준함)	
신청인	① 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자료 보호 요약 내용	⑥ 화학물질확인 증명자료	(보호자료명 :)	
	⑦ 유해성심사 신청자료	화학물질명(총칭명) : (보호자료명 :)	
	⑧ 유통량·배출량 조사자료	(보호자료명 :)	
	⑨ 위해성평가자료	(보호자료명 :)	
⑩ 보호요청기간		년 월 일 까지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보호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첨부서류		수수료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1부		없음	
2. 보호대상자료 1부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